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084-01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

2008.11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7205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084-01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 립 수 산 식 품 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1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박 대 식

연구 원: 최 경 은

요 약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주요 농업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최근 현황을 우리와 비교·분석하고, 모범적인 정책사례를 정책대안으로 검토하며, ②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념적 기반을 구축하여, ③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검토 및 일본, 프랑스, 벨기에(EU) 등 선진농업국에 대한 해외 현지 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하여 해외 주요 농업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위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을 제시함.
- 농업 주 종사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경영주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성 농업경영주는 60세 이상이 78.5%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여성농업인은 농업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 경영주로서의 지위가 명확하지 못함.
- 농림어업 분야의 남녀 임금격차가 48%로 나타나고, 농지원부 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여성의 비율이 19.2%, 전체 후계농업인 중에서 여성농업인은 13.7%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 현실임.

- 현행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 시 농업인 기준을 준용한 ‘농업인 확인제도’를 고시로 마련하고, 가족(농가)경영협약 제도를 마련함.
 -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각종 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농정 및 수산 관련 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을 확대하고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함.
 -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수협 조합원 가입을 유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영능력 및 리더 교육을 실시
 -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단체 교육 실시 및 우수 여성농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함.
 - 다문화가정을 지원하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주요 문제점
 - 관련법에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가족경영협약 모델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농가)경영협약의 추진이 미흡하고, 홍보 및 교육도 부족함.

- 일본에서는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과 함께 농업경영과 경제·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0년 12월에는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2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함.

- 일본의 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경영협정, 농촌여성의 네트워크

크화, 농산어촌 여성의 날, 선진 여성농업인의 활동 고도화 지원, 여성농업인 지도자 대상 전문교육·연수 사업, 여성기업가활동 지원, 전문 여성농업인 양성을 위한 통신교육 강좌, 남녀공동참가 관계 정보제공 강화, 여성 인정농업자의 확대, 농촌여성 능력 향상 과정(개도국 농촌여성 지도자 대상), 농촌 여성조직에 대한 지원 등이 있음.

- 일본에서는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음.
- 유럽의 경우, EU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여성종사자들의 문제와 지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각 국가별로 독자적인 정책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유럽연합에서 대표적인 국가들의 여성농업인의 지위 규정 및 향상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프랑스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농업임금근로자, 농업경영주, 공동농업경영주, 가족종사자로 구분됨.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의료보험, 가족수당, 연금,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정도가 달라짐.
 - 독일은 농가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공동조사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고 있음.
 - 벨기에는 소유계약서 작성, 농지임차의 경우에 양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각 배우자는 수입과 지출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본인 전용 기계나 도구를 구입하여 스스로 관리하며, 공동구입 자재는 공동 소유함.
 - 네덜란드에서는 가족농업 보조자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함. 즉, 경영주는 부인이 가족농장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조세 부담의 경감조치를 요구하거나 부인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덴마크의 경우 부동산 권리 증서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공유, 재산, 수입, 부채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음. 가족농업 보조자로서 여성농업인은 세제상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이탈리아에서는 협력적 배우자들을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고, 가정근로자(domestic workers)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협력적 배우자의 기여 부분이 아직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이혼 또는 파산 시 협력적 배우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음.
- 여성농업인의 지위현황에 관해서 국·내외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외국에 비해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거나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아주 낮음.
-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유럽보다 심함.
 - 가족경영협약의 경우 일본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이제 시작단계임.
 - EU국가에서는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라는 개념이 재정의되어 동거 및 동성 부부에게도 혼인을 통한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함.
 - 프랑스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농업임금근로자, 농업경영주, 공동농업경영주, 가족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에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임.
 - 유럽의 경우, 협력배우자는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 농업부문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관련 기준의 국내·외 비교
- 한국 및 일본은 농업부문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관련 기준이 아직 없음.

다만, 가족경영협약(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의 경우, 공동경영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EU 국가들의 경우,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할 때, 농지소유 및 임차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의 계약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라는 개념을 재정의하여 공동경영주의 개념을 대치하여 사용하기 시작함.
- 프랑스 농업사회보장기구(MSA)의 농업인(공동경영주) 인정방안으로는 ‘최소 자족 가능 면적인 SMI의 1/2 이상’ 또는 ‘1,200 시간 이상의 농업 노동 시간’을 적용하고 있음.
- 독일은 농가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동경영주(공동종사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함.

○ 공동(농업)경영주의 개념 정의

- 공동(농업)경영주는 ‘농사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을 경영주와 함께 공유하면서 영농활동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개념정의를 내릴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공동(농업)경영주는 ‘협력배우자의 자격으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인 및 경영주로서의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공동(농업)경영주의 인정 기준 설정

- 공동(농업)경영주 인정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 1개의 필수요건과 여러 요건 중에서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선택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필수요건: 연간 90일 이상 가족농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농업인확인제도’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
- 선택요건:

- ① 자신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1,000m²(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② 자신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의 농산물거래실적이 연간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③ 가족(농가)경영협약을 체결한 자
- ④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개선된 등록양식에서 공동경영주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자신을 공동경영주라고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 ⑤ 농지원부제도의 개선된 등록양식에서 공동경영주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자신을 공동경영주라고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 ⑥ 후계농업인으로 등록된 자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1개 절 정도를 할애하여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지소유, 농업경영 참여, 수익분배 등에 따라서 ‘농업인’의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형태의 농업인이 존재함을 명시

○ 가족경영협약의 확산 및 내실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가족경영협약에 대한 인정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족경영협약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협약 체결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가족경영협약’ 관련 현장전문가 양성 및 체결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가족경영협약 체결 농가의 조직화 필요

○ 농가경영체 등록제의 개선

- 주민정보에서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농가경영체 등록양식을 개선할 때, 공동경영주의 농업인 해당 여부 사항도 추가로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함.
 - 향후 제정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농지원부제도의 개선
- 현행 농지원부에는 농가주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양식을 개선함에 있어서 농가구성원을 공동농업경영주, 가족농업보조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함.
- 과세 및 재산소유제도의 개선
- 부부의 재산 형성에 여성농업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자산의 공동명의 또는 부인명의 이전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세를 추진
 - 결혼 후 취득한 농지, 주택 등의 자산에 대한 ‘부부공동소유제’ 확립
- 농업인 확인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2009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농업인 확인제도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공동(농업)경영주의 개념 및 관련 정책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부부 및 가족 간의 역할 분담이 좀 더 명확해짐으로 인해서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
 -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됨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보험에서 독립적인 가입자 및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단독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도 본인 명의로 정부의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임.
 - 대다수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위상이 보조적인 가족농업 종사자에서 당당한 직업적 지위를 가지는 공동경영주로서 격상될 것임. 따라서 여성농

업인들의 직업의식이 강화되고 영농의욕이 높아질 것임.

-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있어서 보상수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불이익(예를 들면, 여성농업인을 일반 가정주부로 간주하는 것)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임.
- 여성농업인들이 시중의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용이해지고 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임.

ABSTRACT

Current Status of Foreign Women Farmers and Measures to Improve Korean Women Farmers' Statu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compare Korean women farmers' status and related policies with foreign women farmers' status and related policies; 2) to define the concept and standard of agricultural co-manager; 3) to suggest the measures to improve Korean women farmers' status.

The major research methods were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interview, and so on.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In the ratio of manager and co-manager, Korea has been lower than foreign countries. In the EU, the definition of assisting spouses was amended. Assisting spouses refer to the spouses or life partners of self-employed workers, not being employees or business partners, where they habitual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the self-employed worker and perform the same tasks or ancillary tasks.

In this study, agricultural co-manager refers to the man or woman who participates in the agricultural activities with his(her) manager and performs the same tasks or ancillary tasks. The standard of agricultural co-manager were suggested.

Major measures to improve Korean women farmers' status are: ① defining of the concept and standard of agricultural co-manager, ② establishment of women farmers' legal status, ③ diffusion and improvement of family management agreement system, ④ improvement of agricultural management body registration system, ⑤ improvement of original land registration system, ⑥ improvement of taxation and property possession system, ⑦ education and propaganda of farmer confirmation system, ⑧ others.

Researchers: Dae-Shik Park, Kyung-Eun Choi

Research Period : 2008.7. ~ 2008.11.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4
-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10
- 3. 연구방법 11

제2장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문제점

- 1.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 13
- 2.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2

제3장 해외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관련 정책

- 1. 일본 31
- 2. 유럽연합(EU) 40
- 3. 국내·외 비교 분석 60

제4장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 1. 공동경영주의 개념 정의 및 인정 기준 설정 67
- 2.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립 70
- 3. 가족경영협약의 확산 및 내실화 71
- 4.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개선 72
- 5. 농지원부제도의 개선 73
- 6. 과세 및 재산소유제도의 개선 74
- 7. 농업인 확인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4
- 8. 기타 75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76
부록 1: 일본의 제2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의 기본방향	86
2: 경작지 안에서 가족노동(프랑스 사례)	89
3: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통합신청용)	107
참고 문헌	120

표 차 례

제1장

표 1-1.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 분류	6
-------------------------------	---

제2장

표 2-1. 성별 농가인구 추이(1970~2007)	13
표 2-2.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 중 여성비율의 변화(1990~2007)	14
표 2-3. 연령별·성별 농가인구 분포(2007)	14
표 2-4. 농가의 영농형태 변화(1990~2007)	15
표 2-5. 여성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2007)	15
표 2-6. 농어업인 성별 연금지원 대상자 및 납부자 현황(2007)	17

제3장

표 3-1.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 수 추이	39
표 3-2.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 구성(2007년)	39
표 3-3. 프랑스 농업고용 현황(2006년)	49
표 3-4.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관련 정책 현황에 관한 국내·외 비교 ...	62
표 3-5. 농업부문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관련 기준에 관한 국내·외 비교	65

그림 차례

제3장

그림 2-1. 연금가입 현황	16
그림 2-2. 여성농업인 본인의 영농지위에 대한 평가	20
그림 2-3.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21

제3장

그림 3-1. 일본 농업에서 여성의 비중(2005년)	36
그림 3-2. 인정농업인 수 중 여성의 비율	37
그림 3-3. 가족경영협정 계약 내용(복수 응답)	3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농업의 주 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1970년 28%에서 2006년 52%로, 지난 36년 동안 2배 정도 증가하였음. 2005년 농가 평균 농업노동시간의 80%를 차지하는 가족농업노동시간 중 여성 가족노동시간이 45%를 차지함.
 - 영농형태가 논벼 위주에서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원예 작목 중심으로 변화하여 영농활동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 2005년 농업인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최윤지, 2006), 여성농업인(부인)이 남편보다 노동시간(농번기 기준)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음.
 - 미맥 농가: 남편 10시간 5분, 부인 10시간 57분
 - 시설원예 농가: 남편 11시간 36분, 부인 12시간 2분
 - 과수 농가: 남편 10시간 53분, 부인 11시간 4분
 - 축산 농가: 남편 10시간 15분, 부인 10시간 55분
- 여성농업인은 농업 인력의 핵심으로 성장하여 대부분이 공동경영자 내지 파트너로서 농업노동과 가구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은 농업 이외의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과중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상 농업인에 해당되는 여성 중 80% 가량은 가사종사자로 간주되어 수입을 증명할 수 없어 각종 상·재해 시 보상수준을 낮게 평가받게 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현재 대다수 여성농업인들은 실질적인 공동경영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업 관련 정책자금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사회보장·보험서비스의 독립적인 수혜자가 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은 ‘남녀 농업인의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라는 비전을 갖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파트너십 정착’을 목표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이라는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임.
 - 현재 여성농업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는 농업인의 기준을 ①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대부분의 농지가 배우자(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도 출하통장을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여성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임.
-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07. 12. 21) 여성농업인의 지위인정 관련 조항이 마련되었음.
 -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7조 2항)이 신설됨: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시행령에 ‘농업인 확인제도’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인 확인제도를 새롭게 명문화하는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임.
 - 여성농업인이 필요 시 법적 기준에 의한 ‘농업인’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 ‘농업인’ 불인정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 확인제도’는 여성이나 남성을 떠나 농업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이장이나 면장 등에게 영농사실을 인후보증을 받아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임.
- 최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이미 상당히 오래된 자료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나 국가별 소개 내용도 상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관련 정책을 도입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주요 농업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최근 현황을 우리와 비교·분석하고, 모범적인 정책사례를 정책대안으로 검토하며, ②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념적 기반을 구축하여, ③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임.
 -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을 제시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경제활동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 정기환(1997)은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및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제약점 등을 조사·분석하여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노동생산성 증대, 사회보장 방안,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음.
 - 박대식(2002)은 향후 농촌사회의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제시하였음. 농촌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을 인구구조, 가족구조, 경제활동구조, 지역사회구조 측면에서 제시하고, 이러한 전망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전문농업인, 가정경영인, 지역사회주민, 농촌 및 국가발전의 주체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음.

- 허미영·박민선(2004)은 여성농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서 인정받고 성장하면 여성농업인의 농업만족도 및 농가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전제 하에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실태와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음. 5개 작목 총 3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농업인의 경영결과 참여는 아직 미미하며, 경영과정 참여 역시 일상적인 의사결정영역을 제외한 농업경영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나이가 젊고 영농교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경영과정 및 결과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
- 김경미·고운미(2005)는 여성농업인을 준경영인, 임금근로자, 협업/공동경영주, 독립경영주, 농업보조자로 역할 유형을 분류하여 지역사회활동 저해요인과 지원 방안 및 영농경영 의사결정 참여 정도를 도출하였음. 5개 작목당 30명씩 총 15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자재 구입과 병충해 발생 대처에 관해서는 주로 남편이 결정하고, 일일 농산물 판매량 결정, 농작업별 시간 계획, 농산물 식부 계획 등은 부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강혜정·마상진(2007)은 농업에 주종사하거나 농업과 병행하여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의 여성 농업종사자를 여성농업인의 범위로 규정하여 영농활동, 농외소득활동, 지역사회활동으로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별 실태를 파악하고, 계량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할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나 주부로서의 역할은 제외시켰다는 한계가 있음.
- <표 1-1>에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국내·외 학자들의 분류가 제시되어 있음.

표 1-1.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 분류

학자(연도)	역할/지위 분류	분류 기준
Pearson(1979)	독립적 생산자 농업파트너 농업보조자 농가주부	여성이 수행하는 최우선 역할 (콜로라도 농촌)
Craig(1979)	독립적 생산자 농업파트너 농업보조자 농가주부 여성가장	(호주의 농촌)
Gasson(1980)	농가주부 주부농민/농업보조자 여성농민	농사작업빈도, 농업책임감, 부부분업, 자원 봉사조직 참여, 가사접근, 가사책임감, 관 계(영국의 농업)
Bokemeier&Gar kovich(1987)	농가주부 농업보조자 사업경영자 전업 농업파트너 독립적 농업생산자	농업참여도(농업생산, 정보경영, 회계관리 등), 의사결정참여도, 자아정체감 관계 *사업경영자는 회계 및 정보업무 담당
정기환(1997)	보조적 영농종사자 전문적 농어경영인 자영업 및 전문직 전업주부 농외취업 주부	농업노동력 참여구조, 농업기술 및 경영관 리 기술 수준, 농작업 기계화 접근성, 여 성의 의식 등의 기준으로 분류 필요
김영옥 · 김이선 (1999)	여성농업경영주 농업경영주의 파트너 농업노동자+농업보조자	농사일에 대한 의사결정권, 농업종사여부
김주숙(1999)	여성농민 농가 전업주부 농업생산참여 여성 농외취업 여성 농가소속 자영업 여성	여성의 직업적 분화에 대한 분석 필요성 지적
김경미 · 고운미 (2005)	준경영인 임금근로자 협업/공동경영주 독립경영주 농업보조자	부부역할 모델, 노동농업참여와 의사결정 권,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강혜정 · 마상진 (2007)	독립경영주 공동경영주 보조자 임금취업자	경제활동의 지위

자료: 강혜정 · 마상진(2007), 김경미 · 고운미(2005), 김영옥 · 김이선(1999)으로부터 재구성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조희금(1998)은 농촌여성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경제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음.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지표는 가정 내 경제적 의사결정에의 참여정도와 농가가 보유한 농가자산 가운데 여성명의의 자산소유 여부로 나타났음.
 - 농촌여성들의 가정 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부부가 의논하지만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유형이었음. 다만, 생활비의 사용이나, 가전제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은 부인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음.
 - 전체의 18% 정도가 여성명의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음.
 - 농촌여성 가운데 가정 내 경제적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고, 가계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며,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신 명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박민선(2000)은 EU회원국의 여성농업인 정책은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농업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에서 여성이 독자적으로 정책대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함. 가족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여성을 공동경영인으로 인정하고 가족내에서도 스스로 수입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여성을 독자적인 사회보장의 피보험자로 인정함으로써 농장경영의 안정과 여성농업인 개인의 위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함.
- 최규련(2001)은 농촌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과 그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하고 성역할 태도 변인을 포함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함.
 - 농촌여성은 약간 보수적 성역할태도를 지니며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이었음.
 - 농촌여성의 지위수준에서 가정 내 의사결정권은 동등하나 농사일 의사결정, 재산명의, 가사분담 영역의 지위수준은 매우 낮았고, 전체 지위

수준도 낮았음.

- 농촌여성의 지위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증가하나 지위 만족도는 낮아지며, 부부간의 성역할 태도가 비슷한 것으로 여성이 지각하는 경우 여성의 부부간 지위수준이 높고 지위 만족도가 높았음.
- 김경미(2004)는 농업 부문 여성의 노동 참여는 주로 단순작업 단계에 종사하고 있어 노동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고,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상 농업인으로 간주되는 여성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93.3%) 중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각종 사고나 재해에 노출될 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 명의 이전 또는 양도 등을 통한 현행법상 농업인의 지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따라 독립경영주, 공동경영주, 준경영인, 농업근로자, 농업보조자의 5개 지위로 세분화하여 지위 인정 기준을 정하는 방안, 가족경영협약을 도입하는 방안, 여성 등 가족종사자를 공동경영주 또는 준경영주의 지위로 규정하는 방안, 농지 소유 및 협동조합원 등 현실 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경미(2005)는 2004년 연구에서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화·체계화하여 ‘여성농업인’ 용어에 대한 개념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농업인’의 법적 개념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의 문제와 방안을 제시함. 여성농업인은 ‘농업인’에 대한 규정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농가와 경영주의 개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고,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법적으로 농업인의 개념을 다양화하고, 둘째, ‘가족경영협약’을 도입하여 협약 체결 농가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며, 셋째, 여성이 협동조합원인 경우 농지소유, 소득증명 없이 인정해주는 절차를 보완하도록 함.
- 최윤지(2007)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정 방안으로 법적 지위 인정(농업농촌기본법 농업인 정의 세분화), 실질 농업종사 사실 인정, 여성농업인

의 노동가치 인정 및 반영, 농가 경영의 파트너십 경영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

○ 국제기관 및 국제회의에서의 관련 논의 동향

-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 제14조(1979)는 국가가 여성농업인의 생존과 생활수준, 보건 및 복지수준 향상 조치를 취하고 교육과 신용 접근권 확보, 협동조합 참여, 지역사회활동 등 사회경제적 지위 증진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 제4차 세계여성대회(1995)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 문제 차원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개발과 관련 정책에 여성의 참여 확대에 관심을 전환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이 농업과 사회발전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특히,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 큰 영향을 미침.
-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여성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1995)에서, 여성 농업인 발전을 위하여 농업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 있어서 남녀 간 형평성 증진,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과 정책과정에서 여성 참여 향상,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감소, 취업기회 확대 등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하였음.
- 제2차 세계여성농업인대회(1998)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① 농업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의해 존경받고 지지되어야 함, ② 농업과 관련된 여성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함, ③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인류 건강, 국가번영, 지구환경을 유지 증진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함 등임.
-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제3차 여성행동계획(2001)은 농업 및 농촌개발에서 여성과 농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농업 및 농촌개발에 있어서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봄.
- 제3차 세계여성농업인대회(2002)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리신장은 이제

까지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등 시민권과 참정권 차원과는 달리 생산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의함.

- 제52차 유엔여성지원위원회(2008)에서는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관련 합의문 채택을 통해,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의 지를 재확인하였음.
 -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이행방안 검토, 정치·경제·사회·교육 분야에서의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함. 여성분야에 있어서의 경제사회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긴급사항에 대하여 권고하는 기능을 가짐.
 -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임기 4년으 45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매년 2월 말~3월 초 2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함.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은 공동경영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함.
- 해외 여성농업인의 사례는 일본과 유럽(특히, 프랑스) 중심으로 조사함.

3.2. 주요 연구 내용

-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지위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문제점

- 해외 주요 농업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위 최근 현황 조사
 - 일본, 유럽(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여성농업인 지위 현황
 - 국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현황에 대한 비교 및 분석
 - 농업선진국의 모범적인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정책 대안으로 검토
-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 마련
 - 제도 및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주의 객관적인 개념 및 기준 제시
-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3. 연구방법

- 기존 자료 조사
 - 국내 관련 기관 자료
 - 외국 관련 기관 자료
 - 국내·외 문헌 자료
-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 관련 기존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 농림수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와 각종 사회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거나 재분석함.
 - 기타 관련 연구 결과의 정리 및 재분석

- 선진농업국에 대한 해외 현지 조사
 - 프랑스, 벨기에(EU)

- 전문가 조사
 - 삶의 질 향상 관련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자문을 구함.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및 여성농업인 단체 등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
 - 전문가회의, 면접조사 등을 실시

-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담당자 면접조사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담당자
 -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

- 여성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의견조사
 - 애로사항, 요구사항, 개선방안 등
 - 면접조사,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 사례 수집 등

제 2 장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

1.1. 여성농업인의 인적 특성 및 영농참여 현황

○ 성별 농가인구 추이(표 2-1 참조)

- 농가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50.3%에서 2007년 51.4%로 증가함.

표 2-1. 성별 농가인구 추이(1970~2007)

단위: 천명

연도	농가인구	남 성		여 성	
			구성비(%)		구성비(%)
1970	14,422	7,164	49.7	7,258	50.3
1980	10,827	5,415	50.0	5,412	50.0
1990	6,661	3,279	49.2	3,382	50.8
2000	4,032	1,972	48.9	2,060	51.1
2007	3,274	1,590	48.6	1,684	51.4

자료: 농림부 및 통계청, 각 년도, 『농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 중 여성비율 변화(표 2-2 참조)

- 농가인구 중에서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50.8%에서 2007년 51.4%로 증가함.
- 15세 이상 농가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51.2%에서 2007년 52.0%로 증가함.
- 농업 주 종사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48.3%에서 2007년 52.7%로 증가함.

표 2-2.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 중 여성비율의 변화(1990~2007)

단위: %

구 분	1990	2007	여성비율 증감율 (2007/1990)
농가인구	50.8	51.4	0.6
15세 이상 농가인구	51.2	52.0	0.8
농업 주종사자	48.3	52.7	4.4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1990) 및 농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2007)

○ 연령별·성별 농가인구 분포(표 2-3 참조)

- 30대 이하 연령층의 비율은 남자(30.9%)가 여자(24.8%)보다 낮음.
- 40~50대 연령층의 비율은 여자(31.3%)가 남자(29.1%)보다 높음.
- 60대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여자(43.9%)가 남자(40.0%)보다 높음.

표 2-3. 연령별·성별 농가인구 분포(2007)

단위: %

구 분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자	23.1	7.8	11.9	17.2	21.3	18.7
여자	19.1	5.7	12.4	18.9	22.6	21.3
전체	21.0	6.7	12.1	18.1	22.0	20.0

자료: 농림부 및 통계청, 각 년도, 『농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 농가의 영농형태 변화(표 2-4 참조)

- 농가의 영농형태는 점차 논벼(쌀농사)가 감소하고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과수, 채소, 축산 등이 증가하고 있음.

표 2-4. 농가의 영농형태 변화(1990~2007)

단위: %

구 분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일반밭작물	축산	기타
1990	69.7	6.1	9.8	2.2	0.4	6.5	5.0	0.4
2000	56.9	10.4	17.2	2.7	0.6	6.6	5.2	0.3
2007	49.6	11.7	21.5	3.0	0.9	6.3	6.5	0.5

자료: 농림부 및 통계청, 각 년도, 『농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 여성농업경영주의 비중 변화

- 전체 농업경영주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6.2%에서 2007년 17.4%로 증가함.

○ 여성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표 2-5 참조)

- 여성 농업경영주는 60세 이상이 78.5%를 차지함.

표 2-5. 여성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2007)

단위: 천가구(%)

40세 미만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2(0.9)	11(5.2)	33(15.4)	168(78.5)	21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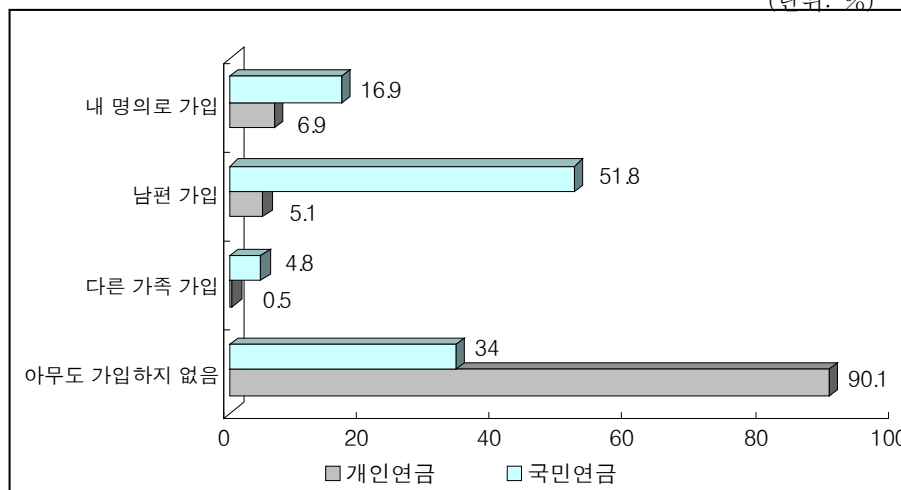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8, 『2007년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 결과』.

1.2.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 여성농업인은 농업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 경영주로서의 지위가 명확하지 못함.
 - 여성농업인의 농지소유 비율이 낮음에 따라 각종 정책대상자 선정이나 정책자금 대출 등이 제한되고, 농업종사 경력도 인정받기 어려움.
 - 농가의 주요 자산(농지, 주택 등)은 가구주인 남성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 직업인으로서 각종 사회보험의 독자적인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여 사회보장서비스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 대단히 취약함.
 - 여성농업인의 연금 가입현황(그림 2-1 참조)
 - 응답가구의 3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66%는 국민연금에 가입함.
 - 국민연금을 여성농업인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비중은 16.9%
 -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및 재해에 따른 피해보상도 일용 노동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임.

그림 2-1. 연금가입 현황

(단위: %)



자료: 강혜정, 2008,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인 성별 연금지원 대상자 및 납부자 현황

- 국민연금 지원대상자(338,645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6% (39,140명)에 불과함.

표 2-6. 농어업인 성별 연금지원 대상자 및 납부자 현황(2007)

구분	지원대상자 (A)	구성비 (%)	납부자(B)		납부율 (B/A)
			구성비 (%)	구성비 (%)	
합계	338,645	100.0	287,983	100.0	85
남자	299,505	88.4	251,603	87.4	84
여자	39,140	11.6	36,281	12.6	93

자료: 농림식품부, 2008, 「'07년 농어민연금지원대상자 현황 내역 분석」.

○ 여성농업인이 현행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율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은 11~15% 정도임.
 - 김경미(2004)에서는 일반농가의 여성농업인은 11.1%, 여성농업인 명의의 농지소유 비율은 농림수산식품부(2008)의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에서 21.3%로 나타남.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율은 90%임.
 - 김경미(2004)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농가 여성은 93.3%, 리더농가 여성은 96.3%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요건을 충족함.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율은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 김경미(2004)의 조사에 의하면, ‘연간 100만원의 농산물 판매수입 통장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농가의 비율은 11.1%로 나타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요건이 20만원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소유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강혜정(2008)의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35.6%로 나타남.

- 여성들은 대개 남편과의 사별 등의 이유로 50대 후반 이후에 단독 경영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농의 주체적인 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당하여 보상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직업적 지위가 없어서 대다수 여성농업인들이 일반 가정주부(무급 가족종사자)로 평가받게 되고, 지역의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내지 공동경영주로서 기여한 농업생산노동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못함.
- 강혜정·마상진(2007)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은 ‘농사일과 가사일을 이중으로 하게 되는 데 따른 육체노동의 문제’, ‘바쁜 농사일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 ‘영농 및 농기계 기술의 부족 문제’ ‘작목반 등의 생산자조직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남.

1.3.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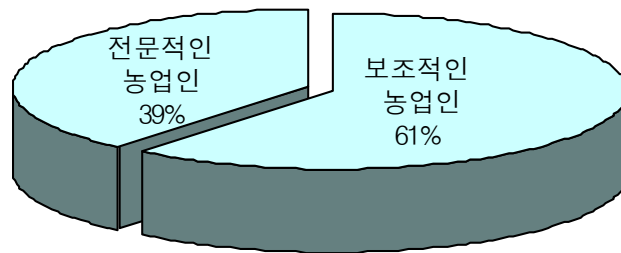
- 농림어업 분야의 남녀 임금 격차(2006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 DB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의 남녀 임금격차(남성 평균임금 대비 여성 평균임금의 비율)는 48%로 나타남.
- 농림수산물식품부 소관 각종 위원회('07년 농정 23.4%, 수산 11.1%)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및 수산관련 위원회의 여성 위촉비율('07년 32%)이 아직까

지 미흡함.

-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여성의 비율(2005년 기준): 19.2%
 -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의 80.8%가 남성
 - 독립 경영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은 세대원으로 기록됨.
- 여성농어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실태('07년 기준)
 - 조합원: (농협) 29%(전체 조합원 대비), (수협) 26%
 - 대의원: (농협) 10,300명 13%, (수협) 93명 3.5%
 - 임원 : (농협) 400명 3.4%, (수협) 5명 0.5%
 - 여성분과위원회: 520개소
-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단체 참여 및 활동(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 중 마을부녀회가 58.8%로 가장 많고, 지역사회단체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37%임.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 유형 중 마을축제 및 행사가 30.8%로 가장 많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은 51.4%임.
- 후계여성농업인 선정현황(2007): 144명
 - 전체 후계농업인(1,044명) 중에서 여성농업인은 13.7%에 불과함.
- 농어촌주민은 도시민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며, 성차별적인 문화도 더 강함.
- 농어업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양성평등교육 경험도 크게 부족함.
- 여성농업인의 영농 지위에 대한 자기 평가
 -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김영옥 · 김이선, 2003)

- 농사를 본인이 주도하는 전문농업인(독립경영주): 0.6%
 - 직업인으로서 인정받는 여성농업인(준경영인): 6.7%
 - 남편과 협력하여 농사짓는 여성(협업배우자, 공동경영주): 78.7%
 - 남편이 주인인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임금근로자): 2.7%
 - 남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돕는 보조자(농업보조자): 11.3%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그림 2-2 참조)
- 보조적인 농업인 61%, 전문적인 농업인 39%

그림 2-2. 여성농업인 본인의 영농지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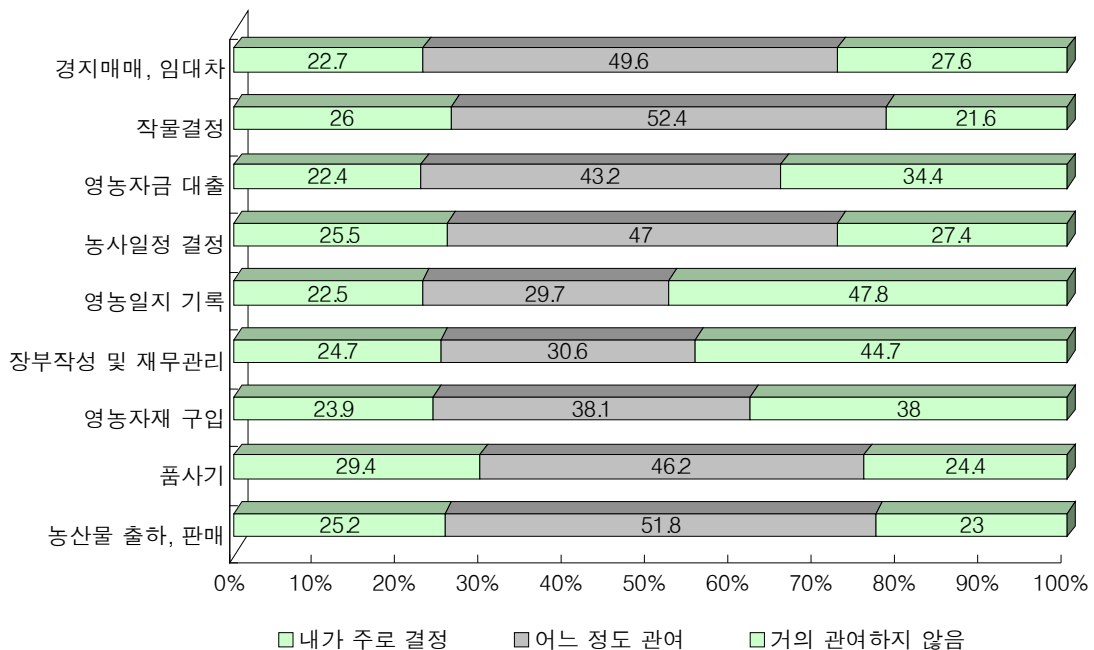


자료: 강혜정, 2008,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김경미(2004)의 일반농가 여성 조사
 - 농사를 주관하는 주도적 농업경영인(독립경영주 성격이 강함): 8.9%
 - 가사에만 종사하는 전업주부: 5.0%
 - 농외취업을 하여 직장에 다니는 사람: 1.7%
 - 농업과 농외직업을 병행하는 복합노동: 10.1%
 - 농사에 전적으로 참여(공동경영주 성격): 74.3%
-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낮음.
-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김영옥 · 김이선)에 따르면, 영농형태 및 의사결정 사안에 따라 참여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여성농업인이 결정하기보다는 남편이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관여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박민선(2004)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 관련 의사결정 영역을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일상적 의사결정,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여성은 일상적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농업경영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참여는 매우 미미하여 남편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그림 2-3 참조)
 - 품사기, 작물결정, 농사일정 결정, 농산물 출하 및 판매 등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장부 및 재무관리, 영농일지 기록 등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2-3.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자료: 강혜정, 2008,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여성농업인의 조직 가입 비율(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단체: 26.7%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4%
 - 작목반: 8.2%
 - 농협 또는 축협 조합원: 36.3%
- 강혜정·마상진(2007)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은 ‘가사, 농사일, 지역사회활동을 병행하는 문제’, ‘마을개발 및 활력사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 ‘정부정책 관련 각종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 부족’, ‘사회참여 경험과 리더십 부족’ 등으로 나타남.

2.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1.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현황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

<농업인 확인제도>

- 농업인 확인제도의 추진 배경 및 경과
- ‘농업인 확인제도’ 관련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농업인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음.
 - 관련 유사 제도: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농어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할 때 ‘농어민’이라는 사실을 마을 이장이 확인하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인정함. ②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에서 농어민 증명방법으로 시·군·읍·면장

발행의 증명서나 농협 발행의 회원증명을 활용함.

- ‘농업인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규정’은 2007년 12월 21에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7조 2항)’는 규정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물부에서 2008년 상반기에 여성농업인단체, 관련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만들었음.
- ‘농업인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규정(안)’은 2008년 후반기에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했으며,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농업인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규정

- 농업인 확인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이나 출장소장에게 하도록 함.
- 농업인 확인서 발급 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이나 출장소장이 하도록 함.
- 농업인 확인 방법: 농지법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 원부등본·대리경작지정통지서·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계약서,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서 및 고용계약서(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영농회사·농업회사법인 종사자 1년 이상)·축산업등록증 등을 제출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보전산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 농촌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업인과 함께 사는 가족농업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고, 기타의 경우는 농업경영정보등록자와 동장·이장 또는 관계공무원·생산자단체 및 공사직원 등의 보증(확인)각서를 첨부한 사람도 발급할 수 있게 함.
- 농업인 확인 규정(안)은 올해 말 농림수산물부장관 고시 후 2009년 초

부터 시행될 예정임.

<가족(농가)경영협약>

○ 가족(농가)경영협약의 내용

- 가족(농가)경영협약은 가족구성원이 동등하게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도록 농업에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경영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노동에 따른 보수와 휴가, 경영승계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가족끼리 서로 대화를 통해 결정하여 문서로 작성함.
-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 간에 영농계획 수립·노동에 대한 보수·휴가·경영승계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합리화를 유도함.
- 농가마다 경영의 목표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각 농가의 상황에 따라서 독특함.
- 가족경영협약을 통해서 경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의사결정을 합리화하여 농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가족(농가)경영협약의 추진 경과

- 2002년: 가족경영협약 모델 도입
- 2004년: 최초 가족경영협약 탄생(대전시 22농가)
- 2006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
 - 충남지역 및 생활개선회원 부부, 경산시 농가 등 92농가 협약체결(누계 총 114 가구)
- 2007년: 가족경영협약 농가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및 자조모임 결성
 - 가족경영협약 체결 누계 총 가구 수: 144가구
- 2008년: 가족경영협약 체결 누계 총 가구 수 200가구(전망치)

○ 가족경영협약의 주요 효과

- 농가의 농업경영과 생활목표를 가족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음.
 - 가족 한명 한명의 생각과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가족구성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
 - 여성의 영농 자부심이 상승되고, 부부간 협의가 증가하여 농사일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음.
 - 가족 간에 더욱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들의 공동합의경영을 위한 ‘농가경영협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보급을 위한 지원 실시
- 여성농업인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농가경영협약’ 교육에 대해 70농가를 대상으로 5천만원을 지원
 -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승계와 노동 보수 및 휴가 등에 대해 ‘농가경영협약’을 체결하도록 체결농가에 대한 연금가입, 창업농 및 부부 후계농 선발,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검토 중임.

<기타 관련 정책>

- 공동농업경영자로서의 지위와 사회적 지위인정 방안 마련
- 농업인 종사 지위를 분류·정립하기 위한 연구 수행
 - 적합한 법체계 적용 방안 및 관련 규정 마련, 실제 농업조사 사실 확인규정 보완 등 법제화 추진
- 여성농업인단체 등에서 전개하고 있는 결혼 후 취득농지에 대한 ‘부부공동소유제’, 여성농업인 ‘1인 1출하대금통장 갖기’, ‘여성농업인 명함 갖기’, ‘부부공동명의 농장 갖기’ 운동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권리향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여성농업인의 법률적 문제를 위한 직접접수창구를 확대하고,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분기별로 실시하는 이동상담실 확대 운영

□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각종 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농정 및 수산 관련 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을 확대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은 2007년 23.4%, 2008년 40%(목표치)이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신설위원회 및 임기도래위원 위촉시 여성위촉비율을 준수하도록 유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 32%, 2008년 35%(목표치)이며, 여성위원의 50%이상을 여성농어업인으로 위촉하도록 유도하며, 시·도별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설치를 추진함.
-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결성되는 마을개발협의회에 여성지도자(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함.
- 시·도 단위로 여성농업인협의회를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여성수산업경영인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함.

□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이 농·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여성분과위원회의 확대 및 여성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확대함.
 -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29%, 수협의 경우는 26%이며, 여성분과위원

회는 2007년 520개소, 2008년 600개소(목표치)로 확대

- 여성농업인이 농협 사업에 참여하도록 조합원 관련 행사와 간행물을 통해 홍보하고, 농협교육원 교육 참여를 유도함.

- 여성농업인이 농·수협외 여성대의원 및 임원 선임이 확대되도록 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영능력 및 리더 교육을 실시
- 부부 공동으로 작목반 단위 회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참여 우수 작목반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작목반 참여를 확대시킴.

□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단체 회원 대상 교육 및 어촌주부사랑모임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단체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여성농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함.
- 여성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품목별 과제분과활동 및 현지 탐방, 정책세미나·토론회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단체의 연구활동과 정책제안을 지원함.
-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홍보 등 각종도·농 교류사업을 지원함.

□ 다문화가정 지원

- 여성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 농업연수원, 농협, 여성농업인단체 등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다문화가정 모국방문('07년 200호, '08년 100호) 등 복지 지원(농협문

화복지재단)

-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60쌍)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농업연수원)
 - 보육도우미, 생활상담 등 여성농업인단체회원 중심의 적응지원
 -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다문화가족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 입국 전 준비기,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 강화기 등으로 나누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80개소, 개소 당 사업비 50백만 원) 운영
- 농촌 다문화후계세대 육성정책 추진
- 농촌 결혼이민자 가족이 농촌에 정착하여 차세대 후계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농식품부).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기초영농교육, 영농심화교육 등의 단계별 인력 육성정책 추진
 - 2008년: 이주여성농업인 기초영농교육(540백만 원)

2.2.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관련법에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나 규정이 없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나 규정이 없음.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임.
 - 근거법령: 농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 내지 제58조
 - 작성대상: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별로 작성함.

- 농지원부에는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나 지위 관련 항목이 없고, 농가 가구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서도 여성농업인이나 배우자의 영농참여나 지위를 고려한 항목이 없고 경영주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농업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개별농가의 경영여건에 따라 정책대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적용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함.
 - 2008년 6월부터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09년 말까지 일괄 등록을 하고 2010년부터는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해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등록정보를 관리할 계획임.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임.

□ 가족(농가)경영협약의 추진이 미흡함

- 가족경영협약 모델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 농가수(누계)가 2007년까지 144가구에 불과함.

- 2002년에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일본의 관련 제도를 참조하고 여성농업인,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족경영협약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음.
- 가족경영협약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부족함.
 - 가족경영협약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부족하여 농업인(여성농업인 포함)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인식이 크게 부족함.
- 가족경영협약 체결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함.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가 미흡함**
- 농협, 수협 등 생산자조직에서의 여성농업인 참여가 아직은 미흡함.
 - 조합원 가입, 여성대의원, 여성임원 등의 측면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이 미흡함.
- 여성농업인의 작목반 가입비율도 낮음.
- 농업·농촌의 특색을 살린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부족하고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임**
- 농업 관련 여러 기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아서 사업효과가 제한적임.
- 농촌 결혼이민자들 대상의 영농교육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음.

제 3 장

해외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관련 정책

1. 일본

○ 1999년 6월에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이 제정됨.

- 남녀공동참여사회란 ‘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사회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보되고, 이로써 남녀가 균등하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 촉진에 관한 시책책정과 실시의 책무를 지고, 국민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본이념: 남녀의 인권존중, 사회제도 및 관행에 대한 배려, 정부의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의 공동참여, 가정생활과 기타 활동의 양립, 국제적 협조 등
- 기본시책: 국가의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이해를 위한 조치, 고충처리, 국제적 협조를 위한 조치, 연차보고서 작성,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지원 등

○ 2000년 12월에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이 수립됨.

- 남녀공동참여 형성에 관한 기본이념으로 남녀의 인권존중, 사회제도 및 관행에 대한 배려,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서의 공동참여, 가정생활과 기타 활동의 양립, 국제적 협조 등을 들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
- 기본시책으로서 국가의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수립, 국민의 이해를 위한 조치, 고충처리, 국제적 협조를 위한 조치, 연차보고서 작성,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지원 등을 규정함.
- 기본계획의 중점목표: 정책·방침 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 남녀공동참여 시각에 입각한 사회제도·관행의 재검토와 의식개혁, 고용 등의 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와 처우 확보, 농산어촌에서의 남녀공동참여 확립, 남녀의 직업생활과 가정 지역생활의 양립 지원, 고령자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의 정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여성의 평생건강 지원, 대중매체에서 여성의 인권 존중, 교육학습의 충실, 지구사회의 ‘평등, 개발, 평화’에 대한 공헌 등임.

○ 2005년에는 제1차 기본계획이 일부 개정되어 제2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이 수립됨(부록 1 참조).

- 추가된 중점목표: 새로운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분야(과학기술, 방재, 지역재건, 마을조성, 관광, 환경)의 남녀공동참여 추진
- 2020년까지 시책의 기본방향 및 2010년 말까지 실시해야 할 주요 시책을 담고 있으며, 각 항목의 구체적 도달목표를 수치로 제시함.

○ 제2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의 주요 목표치

-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을 2020년까지 최소한 30%로 확대함.
- 국립대학법인의 여성교원비율을 2010년까지 20%로 확대함.
- ‘남녀공동참여사회’라는 용어의 인지도를 2010년까지 100%로 끌어올림.

- 적극적 조치(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비율을 2009년까지 40%로 확대함.
 - 2014년까지 육아휴직 취득률을 남성 10%, 여성 80%까지 제고함.
 - 목표수치의 달성 여부는 남녀공동참여회의의 ‘감시·영향조사전문위원회’에 의해 관리됨.
- 활력 있는 농산어촌 실현을 향한 남녀공동참여의 확립(제2차 남녀공동참여 기본계획 중 농산어촌 부문)
- 모든 장소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혁: ① 농산어촌 남녀의 주체성 확보를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의식교육 강화, ② 고정적인 역할분담 관행의 시정, ③ ‘농산어촌의 여성의 날’ 제정 등을 통해서 남녀공동 참여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 및 고양, ④ 조사연구 및 통계사업 추진
 - 정책·방침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①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② 여성의 능력 개발과 적절한 평가
 -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취업 조건·환경의 정비: ①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② 기술·경영관리 능력의 향상, ③ 쾌적하게 일하기 위한 조건 정비
 - 여성이 살기 편하고 활동하기 쉬운 환경 조성: ① 노동 조건 및 환경 정비, ② 도우미제도 확대, ③ 생활환경 정비, ④ 도농교류 활성화
 - 고령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건 및 환경 정비: ① 고령자 생활 지원체제의 정비, ② 고령자의 활동 지원, ③ 노후 자립의 확보
- 일본의 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사업
- 가족경영협정
 - 농촌여성의 네트워크화
 - 농산어촌 여성의 날
 - 선진 여성농업인의 활동 고도화 지원
 - 여성농업인 지도자 대상 전문교육·연수 사업

- 여성기업가활동 지원
- 전문 여성농업인 양성을 위한 통신교육 강좌
- 남녀공동참여 관련 정보제공 강화
- 여성 인정농업인의 확대
- 농촌여성 능력 향상 과정(개도국 농촌여성 지도자 대상)
- 농촌 여성조직에 대한 지원

○ 여성농업인의 존재 형태

- **단독으로 농업경영의 주체가 된 경우(독립경영주):** 남편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독신이면서 농업후계자로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 남편과 사별한 뒤 경영을 이어받은 경우 등임. 남편이나 부모 등이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가족과 공동으로 농업경영에 참가하는 경우(공동경영주):** 남편이나 부모와 함께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이른바 파트너십(partnership)경영을 말함.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의 보조 또는 협력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족종사자):** 공동경영자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임.
- **자신의 가족과는 관계없이 다른 경영자의 고용노동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임금근로자):** 전업적 고용노동자는 많지 않고, 대다수 파트타임 등 일용계약 형태이며, 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됨.

○ 여성농업인이 가족과 공동으로 농업경영에 참가하는 경우(공동경영주)의 점검사항

- 농업수입의 귀속주체로 되어 있는가?: 가족구성원과의 협의에 따라 농업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있는지, 특정부문의 수익을 취득하는지, 급여를 받는지, 용돈을 받는지 등 수입을 귀속받는 형태가

다양함.

- 여성농업인 자신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가?
- 농지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가?
- 농정상의 지위는 어떠한가?: 인정농업인제도의 개선에 따라 가족경영협약 등을 체결했을 경우 한 세대 내에서 복수의 인정농업인이 허용됨.
- 세제상의 지위는 어떠한가?: 1세대 1사업주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가 사업주가 되며 그 외의 공동농업경영자는 통상 사업 전업종사자가 됨.

○ 일본 농업에서 여성의 비중(그림 3-1 참조)

- 농가인구(8,325천명) 중에서 여성의 비중은 50.8%
- 농업 취업인구(3,338천명) 중에서 53.3%
- 기간적 농업 종사자(2,365천명) 중에서 46.2%

○ 인정농업인 수(그림 3-2 참조)

- 총 인정농업인 수: 191,633명
- 여성 단독: 3,685명
- 부부공동: 440가구
- 총 인정농업인 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2.15%

그림 3-1. 일본 농업에서 여성의 비중(2005년)

기준	여성 비중
농가인구 (8,325명)	
농업 취업인구 (3,338천 명)	
기간적 농업종사자 (2,365천 명)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2008.

그림 3-2. 인정농업인 수 중 여성의 비율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2008.

- 농업위원회, 농협에서의 여성 참여 비율(2004년 기준)
 - 농업위원회 4.24%, 농협 개인 정조합원수 15.59%, 농협 임원수 1.53%

- 농림수산성의 심의회에서 여성 참여 비율(2005년 기준): 31.5%

- ‘가족경영협정’제도는 농가 내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보수, 노동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 농가 경영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가족 간의 협약임.
 - 독일의 ‘농지양도계약법’ 모델을 토대로 한 이 제도는 부모와 자식(또는 영농승계자) 간 협정으로 출발했지만 농가구조상 부부 중심으로 변하면서 부부간 체결한 협정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가족경영협정의 주요 내용은 농업경영의 현상과 목표(노동보수, 휴일, 역할분담, 작부계획 등), 일상생활의 현상과 목표(가사, 육아, 공동가계비 지출법 등), 가족의 요구 및 과제 등을 포함하며, 협약내용은 가족 전원이 의논하여 수정 가능함.
 - 가족경영협정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가족이 의논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체결하면 됨.

○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음.

- 인정농업인제도: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가족경영협약 체결 등을 요건으로 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인정농업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인정함. 즉,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도 공동 명의로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음.
- 농업인연금: 농업인연금의 피보험자이면서 인정농업인, 청색신고자(법인화 이전 단계 농가에 대한 세금우대제도) 등 의욕 있는 경영주와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자, 농업후계자가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기본 연금보험료(20,000엔)에 대하여 국고에서 일정 비율을 보조함.
- 농업개량자금: 개별 농업경영에서 가공분야, 신작물분야, 신기술에 도전하려는 배우자가 농업개량자금을 빌리려고 할 때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인정함.

○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현황

- 1996년 5,335가구에서 2007년 37,721가구로 증가함(표 3-1 참조).
- 가족경영협정 체결농가 3만 7,721가구 중 74%는 인정농업인임(표 3-2 참조).
-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각 농가의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됨. 2007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경영 방침 결정’이 8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동시간 및 휴일’이 85.9%, ‘농작업 역할분담’ 74.1%, ‘노동보수’ 71.9%를 차지함(그림 3-3 참조).
- 가족경영협정 체결 유형은 경영주, 경영주의 배우자, 후계자, 후계자의 배우자, 경영주의 부·모 등 간에서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경영주와 배우자 사이에서의 가족경영협정 체결이 50.4%('07년 기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영주-배우자-자식 간의 체결(16.1%)로 나타남.

표 3-1.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 수 추이

단위: 가구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협정 체결 농가	5,335	7,206	9,947	12,030	14,777	17,200	21,575	25,151	28,734	32,120	34,521	37,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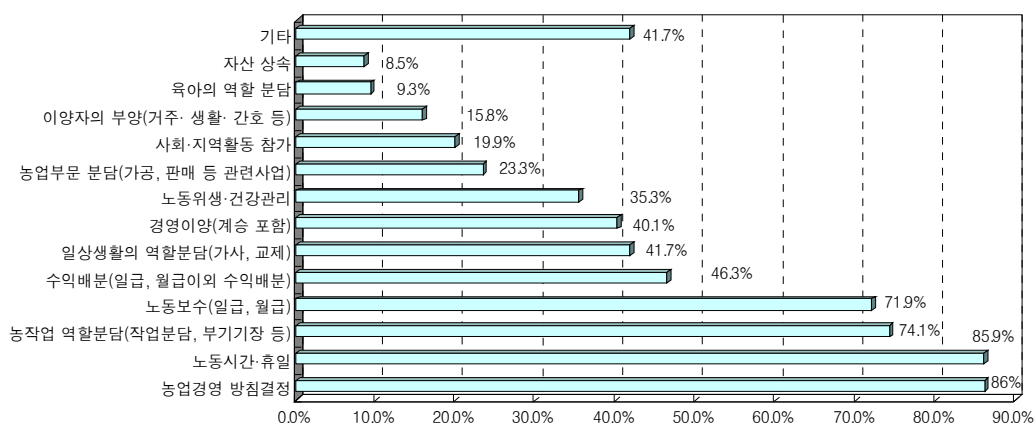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각 년도.

표 3-2.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 구성(2007년)

	협정 농가 수	비율
인정농업인	27,906	74%
법인	757	2%
기타	9,058	24%
전체	37,721	100%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2007.

그림 3-3. 가족경영협정 계약 내용(복수 응답)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2007.

- 가족경영에서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나 농업후계자도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복수의 명의로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정을 위한 공동신청을 할 수 있음.
 - ①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신청을 하는 명의인이 모든 농지법상의 세대원일 것.
 - ② 가족경영협약 등이 체결되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해당 농업경영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해당 명의인 모두에게 귀속할 것, 또한 농업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명의인 모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명확할 것.
 - ③ 해당 가족경영협약 등의 상호결정이 준수되고 있을 것.
- 가족경영협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의사결정 참여가 촉진되었으나 협약의 내용이 가족 간의 약속이므로 내용이 느슨하고 사회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연수는 중앙정부, 도, 시·군, 농협 등에서 가족경영협약, 작물재배기술, 농기계 조작, 농업 부기, 세금 신고, 농산물 가공·판매, 그린투어리즘(농촌관광), 영농 설계, 컴퓨터교육, 자녀양육, 노인수발 등이 있음.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남성생계부양 유형으로 여성의 사회권은 남성노동자의 피부양 배우자, 즉 아내자격에 입각하여 발전해왔음.

2. 유럽연합(EU)

- 유럽연합의 여성정책

- 1957년 유럽공동체의 출발과 함께 로마조약(1975)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이래 유럽연합은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동등한 기회,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등의 영역으로 남녀근로자의 동등권을 확대해 왔음.
 - EU의 여성정책은 성평등 접근법을 시작으로 여성의 불리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와 최근의 성 주류화 전략으로 진전됨.
- EU의 성평등정책은 고용정책, 정책결정에의 균형 잡힌 참여, 직업과 사적생활의 조화, 사회적 보호로 나눌 수 있음.
- 고용정책은 남녀간의 고용 격차 줄이기, 실업률에 있어서 남녀 격차 줄이기, 남녀간의 임금 격차 줄이기로 구성되어 있음.
 - 정책결정에의 균형 잡힌 참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을 의미하며, EU는 공식적 권고, 성적 불평등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강조함.
 - 직업과 사적 생활의 조화: 여성고용을 진작시키면서 남성들이 가정생활에서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갖도록 촉구함.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여성의 임금노동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봄.
 - ① 여성이 임금노동에 접근 가능하고 양질의, 그리고 저렴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함. ② 노인 또는 환자에 대한 보살핌을 국가가 지원하여 여성들이 임금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③ 부모 역할과 직업경력을 조화롭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휴가제도를 마련함. ④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파트타임제, 재택근무, Job Sharing(여러 명이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직장을 공유하는 형태) 등과 같은 유동적인 노동형태를 취하도록 함.
 - 사회적 보호는 세금 및 혜택에서 남녀간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사회적 보호정책은 사회보장제도를 성인지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함.

- EU의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상부구조는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사법재판소이며 그 하부에서 세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남녀평등부’, ‘자문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등이 있음.
- EU의 성평등정책의 세 가지 접근법은 ‘동등대우 확보’(equal treatment), ‘적극적 시정 조치’(positive action),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임.
 - 동등대우 확보 접근법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남녀간 동등대우를 주된 목표로 함.
 - 적극적 시정조치는 법에서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에서 더 나아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함. 과거로부터의 차별적 구조가 갖는 관성적 효과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차별 철폐 전략임.
 - 성 주류화는 모든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전 과정에 있어 남녀 불평등 심화의 방지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우선 사항으로 고려할 것을 제도화하는 전략임.
-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EU 성평등정책이 주로 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EU가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체로 출발했기 때문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평등정책의 범위는 사회보장, 모성보호 및 육아, 비정규직, 고용평등, 상품과 용역에 대한 접근성 관련 내용으로 확대되었음.
- EU의 남녀평등에 관한 9개 지침
 -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일한 임금의 원칙 적용에 관한 회원국 법률의 합치에 관한 지침
 - 채용, 직업 훈련, 승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균등대우 원칙의 이행에 관한 지침
 - 사회보장의 문제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균등대우의 원칙의 점진적 이행에 관한 지침
 - 고용상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의 이

행에 관한 지침

- 농업을 포함한 자영업 종사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균등대우 원칙의 적용과 임신과 육아중의 자영 근로여성의 보호에 관한 지침: 농업종사자를 포함하는 자영업자와 그들을 보조하는 배우자에 대해 평등대우의 원칙을 적용함.
 - 임신 근로자들과 최근 출산을 하거나 수유를 하는 근로자들의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개선 증진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대한 지침
 - 부모양육휴가와 가정적인 이유로 인한 휴가에 대한 유럽이사회 지침
 - 성을 이유로 한 차별 사건에서 입증 책임에 관한 유럽이사회 지침
 - 시간제 근로에 관한 기본 협정 관련 유럽이사회 지침
- 1986년에 만들어진 지침(Directive 613/86)에서 농업을 포함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에서의 남녀평등이 명시되었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있음.
- 지침은 회원국가가 위반 시 제재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임.
- EU의 여성정책 프로그램
- **행동프로그램:** EU집행위원회는 남녀의 차별을 제거하고 기회균등을 위해 행동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집행함.
 - 1차 행동프로그램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 여성의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하였음.
 - 2차 행동프로그램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실행되었으며 직장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3차 행동프로그램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점을 둠. 가정과 직업의 조화를 위한 지원과 고용 창출 프로그램인 NOW를 가동함.
 - 4차 행동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가동되었으며, 모든 정책

에 남녀평등정책, 즉, 성 주류화 개념이 스며들도록 함.

- 5차 행동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① 경제 분야에서의 남녀평등 추구, ② 정책 결정 분야의 평등 지원, ③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권리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 ④ 여성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지원, ⑤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변화시키는 일 지원 등임.
- 6차 행동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가동될 예정임. 2007년은 ‘유럽 기회균등의 해’로 설정함.

- **구조기금 프로그램:** 구조기금이란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지역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유럽사회기금(ESF), 유럽지역발전기금(EFRE), 유럽농업시설과 보장기금(EAGFL), 어업기구보장기금(FIAG) 등이 있음.

- EQUAL은 노동시장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막기 위해서 지원됨.
- NOW는 유럽연합 농업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촉진 프로그램을 지원함.
- AGIS는 2002년 7월 22일 유럽각료이사회에서 유럽시민의 자유, 안전, 권리의 보호를 목표로 경찰과 법원의 협력 작업을 위해서 탄생시킨 프로그램임.
- DAPHNE은 어린이와 청소년 및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유럽의 경우, EU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여성종사자들의 문제와 지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각 국가별로 독자적인 정책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3; 박민선, 1999).

-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인 경우 권리와 의무도 남성 경영주와 동일함. 여성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하는 경우 농지소유 및 임차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의 계약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EU의 여성과 남성의 생활 실태

-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고용 분야가 좀 더 한정되어 있음.
- 경제 및 정치 분야 의사결정의 핵심 지위에는 여성이 아주 소수임.
- EU 25개 국가의 남녀간 평균 임금격차는 15% 정도임.
-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17개월 먼저 은퇴함.
- 여성은 실업률, 장기 실업, 빈곤 등에서 남성보다 취약함.

○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남녀간의 평등 원칙

- 고용에 대한 접근성(승진, 직업훈련 포함)에 있어서 남녀평등
- 보수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있어서 남녀평등
- 직업 관련 사회보장제도

○ EU의 남녀격차 현황(2006년)

- 취업률 격차(남성 취업률에서 여성 취업률을 뺀 것)
 - EU 27개국 평균: 14.4%
 - 벨기에 13.9%, 덴마크 7.8%, 독일 10.6%, 스페인 22.9%, 프랑스 10.8%, 이탈리아 24.2%, 헝가리 12.7%, 스웨덴 4.8%, 영국 11.5% 등
- 실업률 격차(여성 실업률에서 남성 실업률을 뺀 것)
 - EU 27개국 평균 1.4%
 - 벨기에 1.9%, 덴마크 1.2%, 독일 -0.2%, 스페인 5.3%, 프랑스 1.5%, 이탈리아 3.4%, 헝가리 0.6%, 스웨덴 0.4%, 영국 -0.8% 등

○ EU의 전체 취업률 제고 목표: 2010년까지 70%

○ 원래 EU 회원국들과 최근에 새로 가입한 EU 회원국 간에는 여러 가지 지표 상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고용에 있어서 남녀격차를 줄이기 위한 EU의 주요 전략
 - 여성의 취업률을 2010년까지 60%로 제고
 - 취업 분야에 있어서 남녀 격리 현상 완화
 - 남녀 임금 격차 해소
 - 직장 일과 사적 생활의 조화
 - 여성의 사회적 배제 예방
 - 사회단체 및 민간경제부문과의 협조 강화

- 농업을 포함한 자영업의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 관련 지침(Directive 86/613/EEC)에 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8년 10월 3일)
 -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는 자영업자(농업인을 포함하는)의 배우자로서 경영주와 같은 업무 또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임.
 - 경영주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경영주의 업무 파트너가 아니어야 함.
 - 최근 개정안에서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어 분명한 직업적 지위의 하나로 설정되었음.
 - 아내(wife), 혼인이라는 용어 외에 혼인을 하지 않고 사는 동거부부, 동성애 부부 등의 용어가 추가되었고,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협력적 배우자(assisting spouse)’임.
 - EU 27개 국가들의 경우, 협력배우자의 약 2/3 정도는 여성임.
 - 자영업자 및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의 모성(maternity) 보호 개선
 - 임신·출산 유급휴가를 최소 14주 이상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 임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함(의무적인 모성휴가기간은 해산 전후 2주 이상)
 -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의 노동 인정: 동거 및 동성 부부에게도 권리 인정
 - 가족요양을 위한 휴가: 가족원들을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제도 적용
 - 2008년 현재 EU 15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실시 중임.
 - 부성(paternalty)휴가: 배우자의 임신·출산 시 유급휴가제도 도입

2.1.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여성농업인은 여성 자영업자의 지위(임금수령자, 동업자/공동경영인, 보조자)를 선택하도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1980년 농업법에 의해 농장주의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공동책임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채택되었으며 남편의 경영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경우에도 ‘준경영주’의 지위를 인정하였음. 또한 1999년 농업법 개정시 경영주의 부인이 공동경영자로서의 연금수혜 등 남성경영자와 동등한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도록 개정됨. 농업자산을 경영하는 부부는 자산관리에 대해 서로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함(농지 소유권 여부와는 무관). 그리고 임차계약의 종결 혹은 갱신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99년에 프랑스 농업기본법에 공동경영주 관련 지위 규정조항이 마련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4가지 지위(농업임금근로자, 농업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중에서 반드시 1개를 선택해야 함.
-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은 회원들의 사회적 지위를 소작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지소유자, 은퇴농업인으로 구분함.
 - 하부조직으로 여성농업인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s Agricultrices: CNA)가 조직되어 있음.
 - 여성농업인위원회(CNA)의 주요 목적: ① 전문직업인으로서 남녀평등,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추구, ② 농업의 사회·경제적 인식 개선, ③ 농업 및 농촌발전 참여, ④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등임.
-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FNSEA)의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50년 역사
 - 1929년: 카톨릭농민회 결성
 - 1933년: 여성협회 창설
 - 1956년: 청년농업인단체(내부 여성농업인) 창립

- 1957년: 여성농업위원회 창립
 - 1962년: 여성 전문 직업교육 실시
 - 1976년: 여성이 최초로 도 회장이 됨.
 - 1977년: 농업인에게 연간 200시간 교육 보장(정부에서 지원)
 - 1981년: 여성이 최초로 장관이 됨.
 - 1982년: 여성이 경영주가 될 수 있게 됨.
 - 1985년: ‘가장’이란 개념이 없어짐.
 - 1989년: 여성에게도 신디케이트 투표권 부여, 전문직업인임을 강조하여 ‘여성농업위원회’를 ‘여성농업인위원회’로 개칭함.
 - 1991년: 성희롱이 범죄로 규정됨.
 - 1991년: 남녀선거 참정권이 동등해짐.
 - 2005년: 남편 동의 없이도 농업경영이 가능해 짐. 동거자도 모두 권리를 인정하도록 함.
- 프랑스 농업고용(비임금) 현황(2006년): 611,209명
- 경영주 534,891명(87.5%), 공동경영주 67,642명(11.1%), 가족종사자 8,676명(1.4%)
 - 2001년부터 신규 영농 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가 의무사항이 됨.
- 프랑스 농업분야 정규직 임금근로자 수(2006년): 384,520명
- 여성농업인의 경우(2006년) 경영주 129,822명, 공동경영주 61,521명, 임금근로자 99,210명.
- 농업인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여성 경영주 수는 1999년 145,145명에서 2006년 129,822명으로 감소함.
- 남성농업인의 경우(2006년) 경영주 405,069명, 공동경영주 6,121명, 임금근로자 285,310명.

- 전체 농업노동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 경영주 24%, 공동경영주 91%, 임금근로자 26%

표 3-3. 프랑스 농업고용 현황(2006년)

단위: 명(%)

구 분	경영주	공동경영주	임금근로자	계	비고
여성농업인	129,822 (24)	61,521 (91)	99,210 (26)	290,554	-
남성농업인	405,069 (76)	6,121 (9)	285,310 (74)	696,501	-
총 농업고용	534,891 (100)	67,642 (100)	384,520 (100)	987,055	가족종사자 8,676

○ 여성경영주의 노동참여(2006년)

- 공동농업경영체(GAEC): 22,884명
-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 27,029명
- 여성농업인 개인(자신) 명의: 64,503명
- 기타: 15,406명

○ 여성농업인이 많이 참여하는 농업 분야

- 낙농·육우, 식량, 복합영농 등

○ 배우자가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경우

- 공동농업경영체(GAEC) 및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에 참여할 때
- 경작지가 공공 또는 공유 재산일 때
- 부부가 경작지의 공동 임차인일 때

○ 농업사회보장기구(MSA)의 농업인(공동경영주) 인정 방안

- 면적 기준: 최소 자족 가능 면적인 SMI(Minimum Installation Surface Area)의 1/2 이상
 - 면적과 관련하여 실제 또는 이론적 기준이 없을 때 노동시간 기준(연간 1,200시간 이상)을 적용함.
 - 신고제이지만 농업사회보장기구(MSA)에서 신고서양식, 누적 기록 관리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함.
- SMI(Minimum Installation Surface Area)
- 최소 자족 가능 면적으로 군별·영역별로 정하며 품목에 따라 다름.
 - SMI는 젊은 농가가 최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면적 기준(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을 위한)
 - 예를 들면, Vienne County의 경우, SMI가 평야지대는 25ha이고, 조건 불리지역은 34ha임.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농업임금근로자, 농업경영주, 공동농업경영주, 가족종사자로 구분됨.
-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의료보험, 가족수당, 연금,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정도가 달라짐.
 - 농업임금근로자: 완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그러나 임금, 노동계약, 상관(상사)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음.
 - 농업경영주는 완전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음.
 - 공동농업경영주(협력적 배우자의 지위)는 불완전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음.
 - 협력배우자의 지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① 영농에 참여하거나(관리인 포함) 배우자의 농업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고, ② 보수를 받지 말아야 하며, ③ 회사의 정규 사원이 아니어야 함.
 -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에 비해서 각종 보험료가 싼 대신에 혜택의 수준도 낮음. 예를 들면, 가족수당의 경우, 공동경영주는 보험료를 전혀 내

지 않는 대신에 혜택은 경영주의 2/3 정도임.

- 가족종사자는 최소 수준의 사회보장이 최고 5년까지 지원됨.

○ 2006년 농업지도법은 협력배우자의 지위와 사회보장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음.

- 2006년 이전에는 협력배우자(공동경영주)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주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06년 농업지도법을 제정함으로써 인해서 경영주의 동의는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었음.
- 협력배우자의 지위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됨.

○ 프랑스 농업회사법인에서의 여성농업인 지위규정

- 공동농업경영체(GAEC): ① 공동노동을 위한 조합적 성격이 강한 법인으로 10인 이하 구성원으로 조직, ② 구성원 전원이 경영에 참여해야 하며 각자가 독자적인 경영주 자격 보유, ③ 부부와 제3자가 참여해야 하므로 여성은 독자적 경영주 신분 보유
-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 ① 출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구성원은 동산, 부동산, 현금 중 적어도 하나를 출자해야 함, ② 구성원 모두 경영에 참여할 필요는 없고, 1인 출자로도 가능하며 부부만으로 설립이 가능, ③ 부부가 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부인이 출자를 해야 하므로 부인의 재산이나 재산에서의 지분이 법인결성에 앞서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

○ 농업 관련 보험료는 3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한 번 선택을 하면 5년 동안 같은 방법을 유지해야 함.

○ 공동경영주 관련 역점사업

- 모든 활동에서 남녀평등을 지향함.

- 농업등기부제도를 마련하여 농업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지위를 손쉽게 기입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임.
-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의 부인인 경우, 남편의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건강보험, 가족수당의 수급자격을 가짐(장애연금은 제외).
 - 퇴직연금은 여성농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 정액연금을 받음.
 - 경영주였던 배우자 사망 시: 남편의 정액연금잔액+소득비례연금의 1/2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음. 단, 부인이 경영주가 되어 55세에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우자(부인)가 경영주로서 보험을 승계함.
- 유급 모성휴가는 현재 일반 근로자는 16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일반 자영업자는 8.5주(여성농업인 2주) 사용할 수 있음.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 2007년 7월부터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됨.
 - 이혼 시 협력자의 지위 상실
 - 협력배우자는 실업보험의 혜택도 받음.
 - 파산 시 결혼 후의 사업은 공동 책임을 짐.

2.2. 독일

-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도입으로 남녀평등이 실질적으로 크게 진전됨.
 -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의 정책과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남녀를 평등하게 고려함.

- 독일은 부인이 남편과 공동으로 농장을 소유할 경우 부부명의로 농장을 토지등기부에 등록함.
- 농업노동의 구조(2005년)
 - 가족노동 771,630명, 비 가족노동 193,490명
 - 경영주 366,230명, 공동경영주 193,970명, 가족 종사자 211,430명
-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 산재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이 주요 복지제도임.
 -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사용자 및 가내수공업자, 실업자, 조산원, 안마사, 학생 및 사고 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등을 당연 적용대상으로 함. 산재보험은 전 농장에 가입의무가 있음.
 - 농업부문 산재보험은 농업부문 산재보험조합 독일연방총연맹 산하에 17개 산재보험으로 조직되어 있음.
 - 질병보험은 경영주, 배우자, 가족 및 농장 작업원에 적용됨: 질병보험은 가입자 및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시켜 주는 보험임. 질병보험은 당연적용 대상자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적 질병보험에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 농업건강보험은 전업적 경영자, 농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의 가족과 18세 이하의 자녀에 적용
 - 노령연금은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자와 가족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음: 농업경영자의 경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65세 이상이고 농업 경영권을 9년 이상 이양했으며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임.
- 유급 모성휴가는 현재 일반 근로자는 14주를 사용할 수 있음.
 - 순 수입(net income)의 70% 지급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 협력배우자는 회사 또는 농장의 공동소유주로 봄.
 - 동업기간 동안에 얻은 수익은 공동 소유함.
 - 파산보험에서 일반 종업원처럼 보장되지 않음.

- 독일은 농가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공동종사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니데르작센주의 경우에는 농가등록을 할 때 사업주(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종사자 1 및 공동종사자 2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2.3. 벨기에

- 벨기에는 소유계약서 작성, 농지임차의 경우에 양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각 배우자는 수입과 지출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본인 전용 기계나 도구를 구입하여 스스로 관리하며, 공동구입 자재는 공동 소유함.

- 협력배우자(aiding spouse)의 공동경영(공동소유) 지위는 200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사회보장제도(INASTI)에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함.
 - 협력배우자인 공동경영주는 사회보장 권리에 있어서 경영주와 동일한 대우를 받음.
 - 소유권과 생산권을 분리함.

- 농업노동의 구조(2005년)
 - 가족노동 78,830명, 비 가족노동 13,540명
 - 경영주 46,050명, 공동경영주 20,660명, 가족 종사자 12,120명

-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 농업경영주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 농업경영주와 결혼한 여성농업인은 본인 자격으로 보험가입 불가(남편에서 유래된 복지혜택만 보유)
 - 주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예: 입원), 가족수당, 남편의 퇴직연금, 남편이 부인을 위해 가입한 유족연금의 수혜자격을 가짐.
 - 질병, 출산, 재해로 인한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은 없음.
 - 기업의 피고용 여성농업인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 수혜

- 유급 모성휴가는 현재 일반 근로자는 15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자영업자는 8주를 사용할 수 있음.
 - 자영업자(여성농업인 포함)의 월 지급 수준: 월평균 임금의 83% 수준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 2006년 개혁 이래로 협력배우자들은 일반 자영업자와 거의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 이혼 시 협력자의 지위 상실
 - 파산보험은 없음.

2.4.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유한책임 조직 또는 가족원 공동조직의 일원인 경우에 공동경영주로 인정하고 있고, 가족농업 보조자인 여성농업인은 세제혜택이 있음. EU 차원에서 임금수령자로서의 여성농업인은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배우자의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 종속적 지위로 인해 금지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가족농업 보조자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함. 즉, 경영주는 부인이 가족농장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조세 부담의 경감조치를 요구하거나 부인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부부간의 재산계약을 맺은 부부에게는 현재 및 장래의 전 재산을 공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재산과 부채의 전부를 공유함.
 - 여성농업인은 남편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 재산의 1/2과 재산에서 파생하는 부가가치의 1/2에 대한 권리를 가짐.

- 농업노동의 구조(2005년)
 - 가족노동 160,480명, 비 가족노동 64,240명
 - 경영주 7,790명, 공동경영주 42,500명, 가족 종사자 40,190명

-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 여성농업인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음.
 - 네덜란드에서는 전 국민이 세금 외에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퇴직연금, 폐질연금, 유족연금, 가족수당 등을 받음.

- 유급 모성휴가는 현재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16주를 사용할 수 있음.
 - 자영업자(여성농업인 포함)의 월 지급 수준: 임금의 100%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 협력배우자는 신규 모성보호 수당을 받게 됨.
 - 이혼 또는 파산 시의 사회보장제도는 없음.

2.5. 덴마크

- 덴마크의 경우 부동산 권리 증서를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공동경영주

가 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공유, 재산, 수입, 부채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음. 가족농업 보조자로서 여성농업인은 세계상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가족농업 보조자(협력자): 배우자(경영주)를 돕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세계상의 특별혜택을 부여함. 한 쪽 배우자가 소유한 농장에서 부부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서 발생한 수입은 농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맡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함.
 - 부부가 희망하면 농장수익의 50%를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소득에 대해 과세함.
- 농업노동의 구조(2005년)
 - 가족노동 69,200명, 비 가족노동 22,030명
 - 경영주 47,730명, 공동경영주 14,540명, 가족 종사자 6,920명
-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 사회복지법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차별이 없음. 따라서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 동등한 자격으로 가입, 수혜
 - 신체장애보험 중 농업경영인의 부인은 농장취로의 경우에도 신체장애나 그로 인해 취로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상은 받지 못함.
 - 경영주의 부인은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가수당 수혜: 남편농장에 과세된 소득의 일부가 부인의 농업노동에서 발생한 것이란 점을 세무서에 증명한 경우에 한함.
 - 출산 전 4주간, 출생 후 24주간 신고소득의 90%에 해당하는 출산수당을 수혜: 여성농업인의 남편은 2주간 부권수당 청구 가능
 - 자영업자 실업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한 여성농업협력자는 조기퇴직금 청구 가능.

- 유급 모성휴가는 현재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여성농업인 포함) 모두 최대 52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자영업자(여성농업인 포함)의 월 지급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 협력배우자는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 이혼 및 파산 시에도 일반 국민들과 같은 혜택을 받음(보편적 복지)

2.6. 이탈리아

- 공동경영주(소유주)의 자격
 - 준(associate) 경영주: 농업회사에 참여하는 부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
 - 배우자와 가족들의 참여를 고려하기 위해서 집합적 경영(collective management)이라는 개념을 도입함.
 - 배우자는 자신의 참여 정도에 비례하여 보수(보조금)를 받음.
- 250만 농장(농가) 중에서 1.5%인 40,000개가 회사 형태이고, 나머지는 개별 농가임.
- 농업노동의 구조(2005년)
 - 가족노동 2,594,660명, 비 가족노동 245,570명
 - 경영주 1,352,360명, 공동경영주 672,520명, 가족 종사자 569,780명
- 유급 모성휴가는 현재 일반 근로자는 20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자영업자는 35주를 사용할 수 있음.
 - 자영업자(여성농업인 포함)의 월 지급 수준: 부문별 최저임금의 80%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 협력배우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음.
 - 협력배우자는 가정근로자(domestic workers) 범주에 포함시킴.
 - 이혼 또는 파산 시 협력배우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음.

2.7. 스페인

- 공동경영주(소유주)의 자격: 농장과 투자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50% 이상 이어야 하며, 젊은 농업인부부에게만 적용됨.
 - 소유권의 1/3 이상의 이전을 전제로 함.
- 공동경영(공동소유)은 두 배우자 모두 직접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농장경영에도 함께 책임을 짐.
- 전체 농가의 20~25% 정도인 젊은 농가에서 공동경영체도의 혜택을 보고 있음.
- 농업노동의 구조(2005년)
 - 가족노동 1,796,390명, 비 가족노동 339,940명
 - 경영주 911,820명, 공동경영주 344,740명, 가족 종사자 539,820명
- 유급 모성휴가는 현재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16주를 사용할 수 있음.
 - 자영업자(여성농업인 포함)의 월 지급 수준: 모성휴가 기간 임금의 100%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 협력배우자의 기여 부분이 아직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 이혼 또는 파산 시 협력배우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음.

3. 국내·외 비교 분석

- 여성농업인의 지위현황에 관한 국·내외 비교(표 3-4 참조)
 - 한국은 외국에 비해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거나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아주 낮음.
 -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유럽보다 심함.
 - 가족경영협약의 경우 일본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이제 시작단계임.
 - EU국가에서는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라는 개념이 재정의되어 동거 및 동성 부부에게도 혼인을 통한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함.
 - 협력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유럽에서는 유급 가족요양 및 부성(*paternity*)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함.
 - 유럽 각국 농업에 있어서 공동경영주는 여성이 약 2/3를 차지함.
 - 프랑스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농업임금근로자, 농업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에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임.
 - 유럽의 경우, 협력배우자는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 농업부문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관련 기준에 관한 국내·외 비교
 - 한국 및 일본은 농업부문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관련 기준이 아직 없음.
 - 가족경영협약(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의 경우, 공동경영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EU 국가들의 경우,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할 때, 농지소유 및 임차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로의 계약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라는 개념을 재정의하여 공동경영주의 개념을 대치하여 사용하기 시작함.
- 프랑스 농업사회보장기구(MSA)의 농업인(공동경영주) 인정방안으로는 ‘최소 자족 가능 면적인 SMI의 1/2 이상’ 또는 ‘1,200 시간 이상의 농업 노동 시간’을 적용하고 있음.
- 독일은 농가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동경영주(공동종사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함.
- 여성농업인이 유한책임 조직 또는 가족원 공동조직의 일원인 경우에 공동경영주로 봄.

표 3-4.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관련 정책 현황에 관한 국내·외 비교

국가	여성농업인의 지위현황 및 관련 정책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농업경영주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 - 여성농업인이 농업인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 간주됨. - 여성농업인은 직업인으로서의 각종 사회보험의 독자적인 가입대상이 되지 못함. - 여성농업인이 현행법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율은 아주 낮음(농지 소유 기준으로는 11~15%, 농산물 판매액 기준으로는 10% 미만) - 농림어업 분야 남녀 임금격차(남성 평균임금 대비 여성 평균임금)는 48% - 가족경영협약: 2007년까지 총 144가구 체결, 2008년까지 총 200가구 체결 전망 - 제1차 및 제2차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 비율(2007): 23.4%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및 제2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 - 가족경영협정: 2007년까지 37,721가구 체결 - 여성 인정농업인의 확대 -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음. - 여성의 사회권은 남성노동자의 피부양 배우자, 즉 아내자격에 입각하여 발전해옴.
EU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27개 국가의 남녀간 평균 임금격차는 15% 정도임. - 남녀 취업률 격차(남성 취업률-여성 취업률)는 14.4% - 성평등정책은 고용정책, 정책결정에의 균형 잡힌 참여, 직장과 사적생활의 조화, 사회적 보호로 구분할 수 있음. - 성평등 접근법: 동등대우 확보(equal treatment), 적극적 시정 조치(positive action),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 농업을 포함한 자영업의 고용에 있어서 남녀평등 관련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어 동거 및 동성 부부에게도 혼인을 통한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함. · EU 27개 국가들의 경우, 협력배우자의 2/3 정도는 여성임. · 임신·출산 유급휴가를 최소 14주 보장함. · 유급 가족요양휴가 및 부성(paternalty)휴가제도 도입

표 3-4.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관련 정책 현황에 관한 국내·외 비교(계속)

국가	여성농업인의 지위현황 및 관련 정책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고용(비임금) 현황(2006년): 611,20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 87.5%, 공동경영주 11.1%, 가족종사자 1.4% - 여성농업인 현황(2006년): 290,55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 44.7%, 공동경영주 21.2%, 임금근로자 34.1% - 전체 농업노동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 24%, 공동경영주 91%, 임금근로자 26% - 배우자가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농업경영체(GAEC) 및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에 참여할 때 · 경작지가 공공 또는 공유 재산일 때 · 부부가 경작지의 공동 임차인인 때 - 농업사회보장기구(MSA)의 농업인(공동경영주) 인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기준: 최소 자족 가능 면적인 SMI(Minimum Installation Surface Area)의 1/2 이상 · 면적과 관련하여 실제 또는 이론적 기준이 없을 때 노동시간 기준(연간 1,200시간 이상)을 적용함.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농업임금근로자, 농업경영주, 공동농업경영주, 가족종사자로 구분됨. - 유급 모성휴가는 현재 일반 근로자는 16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일반 자영업자는 8.5주(여성농업인 2주) 사용할 수 있음.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7월부터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됨. · 이혼 시 협력자의 지위 상실 · 협력배우자는 실업보험의 혜택도 받음. · 파산 시 결혼 후의 사업은 공동책임을 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이 남편과 공동으로 농장을 소유할 경우 부부명의로 농장을 토지 등기부에 등록함. - 농업노동의 구조(2005년): 771,6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 47.5%, 공동경영주 25.1%, 가족 종사자 27.4% - 유급 모성휴가는 일반 근로자는 14주를 사용할 수 있음.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배우자는 회사 또는 농장의 공동소유주로 봄. · 동업기간 동안에 얻은 수익은 공동 소유함. · 파산보험에서 일반 종업원처럼 보장되지 않음.

표 3-4.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관련 정책 현황에 관한 국내·외 비교(계속)

국가	여성농업인의 지위현황 및 관련 정책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배우자인 공동경영주는 사회보장 권리에 있어서 경영주와 동일한 대우를 받음. - 농업노동의 구조(2005년): 78,8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 58.4%, 공동경영주 26.2%, 가족 종사자 15.4% - 유급 모성휴가는 현재 일반 근로자는 15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자영업자는 8주를 사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여성농업인 포함)의 월 지급 수준: 월평균 임금의 83% 수준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배우자들은 일반 자영업자와 거의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 이혼 시 협력자의 지위 상실, 파산보험은 없음.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노동의 구조(2005년): 90,4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 8.6%, 공동경영주 47.0%, 가족 종사자 44.4% - 유급 모성휴가는 현재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16주를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여성농업인 포함)의 월 지급 수준: 임금의 100%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모성보호 수당을 받게 됨. · 이혼 또는 파산 시의 사회보장제도는 없음.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노동의 구조(2005년): 69,19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 69.0%, 공동경영주 21.0%, 가족 종사자 10.0% - 유급 모성휴가는 현재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최대 52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여성농업인 포함)의 월 지급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배우자는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 이혼 및 파산 시에도 일반 국민들과 같은 혜택을 받음.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노동의 구조(2005년): 2,594,6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 52.1%, 공동경영주 25.9%, 가족 종사자 22.0% - 유급 모성휴가는 자영업자는 35주를 사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의 월 지급 수준: 부문별 최저임금의 80%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노동의 구조(2005년): 1,796,3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주 50.8%, 공동경영주 19.2%, 가족 종사자 30.0% - 유급 모성휴가는 현재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16주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의 월 지급 수준: 모성휴가 기간 임금의 100% - 협력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배우자의 기여 부분이 아직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 이혼 또는 파산 시 협력배우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음.

표 3-5. 농업부문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관련 기준에 관한 국내·외 비교

국가	공동경영주 인정 기준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준이 없음. - 가족경영협약 체결 농가의 경우 공동경영주로 인정 가능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준이 없음. -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의 경우 공동경영주로 인정 가능
EU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하는 경우 농지소유 및 임차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라는 개념을 재정의하여 공동경영주의 개념을 대치하여 사용함. - 협력배우자는 자영업자의 배우자로서 경영주와 같은 업무 또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임. · 경영주에 고용되어 있거나 경영주의 업무(사업)파트너가 아니어야 함.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자동으로 갖게 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농업경영체(GAEC) 및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에 참여할 때 · 경작지가 공공 또는 공유 재산일 때 · 부부가 경작지의 공동 임차인인 때 - 농업사회보장기구(MSA)의 농업인(공동경영주) 인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기준: 최소 자족 가능 면적인 SMI(Minimum Installation Surface Area)의 1/2 이상 · 면적과 관련하여 실제 또는 이론적 기준이 없을 때 노동시간 기준(연간 1,200시간 이상)을 적용함. - 공동경영주(협력배우자)는 불완전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음.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은 농가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공동종사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고 있음. - 농장 공동 소유 시 권리와 의무도 공유함.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배우자(aiding spouse)의 공동경영(공동소유) 지위는 200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사회보장제도(INASTI)에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함. - 공동경영주 인정: 소유계약서 등을 공동명의로 작성 - 협력배우자인 공동경영주는 사회보장 권리에 있어서 경영주와 동일한 대우를 받음.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유한책임 조직 또는 가족원 공동조직의 일원인 경우에 공동경영주로 인정

표 3-5. 농업부문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관련 기준에 관한 국내·외 비교(계속)

국가	공동경영주 인정 기준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의 경우 부동산 권리 증서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공유, 재산, 수입, 부채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음.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주(소유주)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경영주: 농업회사에 참여하는 부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 · 배우자와 가족들의 참여를 고려하기 위해서 집합적 경영(collective management)이라는 개념을 도입함.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주(소유주)의 자격: 농장과 투자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젊은 농업인부부에게만 적용됨. · 소유권의 1/3 이상의 이전을 전제로 함.

제 4 장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1. 공동경영주의 개념 정의 및 인정 기준 설정

-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구분
 -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농업)경영주’, ‘공동(농업)경영주’, ‘가족(농업)보조자’, ‘(농업)임금근로자’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최근 유럽 및 일본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이와 유사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제1차 및 제2차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여성농업인들은 자신들을 배우자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는 공동경영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경영의 정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함.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일정한 경영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동력

과 토지 및 자본재를 이용하여 작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사양 및 농산물 가공 등을 함으로써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이용, 판매, 처분하는 조직적인 수지경제단위임'(정용복 역, 1989).

- 농업경영이란 '생산, 제도, 기술요소, 인간요소, 시장, 정책,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하에서 개별 영농단위가 자체의 경제 내·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즉 농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임'(심영근·이상무, 1999).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설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며 이를 통제하는 일련의 동태적인 과정'임(김용택 외, 2003).

○ 농업경영의 주된 목표

- 농업경영의 주된 목표는 농업인(경영주)이 자신과 가족이 함께 가용 자원(토지, 자본, 기술, 정보)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생산하고 가축을 사육하여 생산물을 직접 또는 적절하게 가공하여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높은 소득을 확보하는 것임.

○ (농업)경영주의 개념에 관한 논의

- 농업부문에서 '경영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경우는 별로 없으나 암묵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세대의 대표(주로 남성)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등에서 통계조사의 기준으로 삼는 경영주란 '농사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배할 작물의 결정, 비료·농약 등 농용자재의 구입, 인부의 고용, 수확물의 처분 등 농사일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농사일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음.
 - 그리하여, 농업총조사 등에서 경영주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 등에서 생산한 상품의 출하대표권을 갖고 있는 자'임.
- 농업부문에 있어서 경영주란 '농업에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농업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지칭함.

- 경영주란 세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갖고 농사일을 총괄하는 사람임.

○ 공동(농업)경영주의 개념 정의

- 공동(농업)경영주는 '농사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을 경영주와 함께 공유하면서 영농활동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개념정의를 내릴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공동(농업)경영주는 '협력배우자의 자격으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인 및 경영주로서의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공동(농업)경영주의 인정 기준 설정

- 공동(농업)경영주 인정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 1개의 필수요건과 여러 요건 중에서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선택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필수요건: 연간 90일 이상 가족농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농업인확인제도'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
- 선택요건:
 - ① 자신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1,000㎡(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② 자신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의 농산물거래실적이 연간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③ 가족(농가)경영협약을 체결한 자
 - ④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개선된 등록양식에서 공동경영주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자신을 공동경영주라고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 ⑤ 농지원부제도의 개선된 등록양식에서 공동경영주 여부를 확인하는 문

- 항에서 자신을 공동경영주라고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 ⑥ 후계농업인으로 등록된 자

2.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1개 절 정도를 할애하여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1개 조항(제27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음.
 - 농지소유, 농업경영 참여, 수익분배 등에 따라서 ‘농업인’의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4가지 유형의 농업인이 존재함을 명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농업경영주, 공동농업경영주, 가족농업보조자, 농업임금근로자의 개념정의 및 인정 기준을 설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여성농어업인을 농업경영주, 공동농업경영주, 가족농업보조자, 농업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제정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 지역 단위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전남, 전북, 제주도, 경북, 충북 등에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3. 가족경영협약의 확산 및 내실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가족경영협약에 대한 인정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가족농의 경영안정 촉진과 가족경영협약 추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 ‘가족경영협약 농가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가족경영협약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협약 체결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킴.
 - 신문, 방송, 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가족경영협약의 필요성, 긍정적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농가 지도용 가족경영협약 매뉴얼 개발
 -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사업 연계 강화
- ‘가족경영협약’ 관련 현장전문가 양성
 -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현장전문가를 육성
 - 도 단위 담당자 및 시·군 지도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
 - 사업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시
 - ‘가족경영협약’교육을 이수한 우수 농가 중에서 교육진행 도우미를 발굴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함.
- 가족경영협약 체결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 연금보험료 지원, 정책자금 지원, 세금감면 등과 같은 지원정책이 필요함.
 -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 등의 우선 지원,

농가 경영개선 노력으로 인정하는 가점제의 도입 등을 검토함.

- 농지소유 이전, 부부공동명의회 등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감면, 농지등기권리증 등록비 지원 등의 세금 감면, 전업농·창업농 등 선발
- 종합금융자금 지원 시 우대, 가족종사원 연금가입, 농업인 업무상 재해보험 가입 등 지원

○ 가족경영협약 종합관리체계 구축

- 가족경영협약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효과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여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사전 및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함.
-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의 관련 부서, 도 및 시·군의 현장 담당자,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가족경영협약 체결 농가의 조직화

- 이미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한 농가들을 조직화하여 재교육시키고, 가족경영협약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해서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경영정보 등록 시 향후 농림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축소로 농업인의 신청편의를 제고할 수 있음.

-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양식의 주민정보 항목에서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등록양식에서는 <경영주 외 세대원 중 농업종사자> 관련 사항으로 ‘성명’과 ‘경영주와의 관계’만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 <경영주의 농업인 해당 여부>는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 및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양식을 개선할 때, 공동경영주의 농업인 해당 여부 사항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함.
 - 가족경영협약 체결 관련 정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제정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5. 농지원부제도의 개선

- 현행 농지원부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하고 있음.
- 현행 농지원부 작성 대상 농업인 기준
 - 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1,000㎡(비닐하우스 등 33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는 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 소유농지 없이 상기 면적 이상을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작성 대상임.
- 현행 농지원부에는 농가주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양식 개선시 농가 구성원을 공동농업경영주, 가족농업보조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함.

6. 과세 및 재산소유제도의 개선

- 부부의 재산 형성에 여성농업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자산의 공동명의 또는 부인명의 이전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세를 추진
 - 일정 면적의 농지를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양도.
- 결혼 후 취득한 농지, 주택 등의 자산에 대한 ‘부부공동소유제’ 확립

7. 농업인 확인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2009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농업인 확인제도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농업인 확인제도에 관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농업인단체 모임, 반사회, 영농교육 등을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8. 기타

- 사회보험에서의 공동경영주의 의무 및 권리를 강화

- 공동경영주와 사회보험 부담 방식
 - (1안)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동일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동일 수준의 보험금 및 혜택을 받게 하는 방식
 - 장점: 양성평등 지향적이고, 공동경영주의 사회보장 강화
 - 단점: 공동경영주의 보험료 부담 과중
 - (2안) 공동경영주는 경영주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에 더 낮은 수준의 보험금 및 혜택을 받게 하는 방식
 - 장점: 공동경영주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
 - 단점: 공동경영주의 사회보장(보험금) 수혜 수준이 낮음.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연구의 개요

- 여성농업인은 농업 인력의 핵심으로 성장하여 대부분이 공동경영자 내지 파트너로서 농업노동과 가구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상 농업인에 해당되는 여성 중 80% 가량은 가사종사자로 간주되어 수입을 증명할 수 없어 각종 상·재해 시 보상수준을 낮게 평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농업인은 농업 관련 정책자금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사회보장·보험서비스의 독립적인 수혜자가 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임.
- 최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상당히 오래된 자료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나 국가별 내용도 상세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관련 정책을 도입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서 참고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주요 농업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최근 현황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고, 모범적인 정책사례를 정책대안으로 검토하며, ②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념적 기반을 구축하여, ③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임.
 -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을 제시
-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 검토 및 일본, 프랑스, 벨기에(EU) 등 선진농업국에 대한 해외 현지 조사 및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해외 주요 농업선진국 여성농업인의 최근 지위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문제점

- 농업 주 종사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경영주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성 농업경영주는 60세 이상이 78.5%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여성농업인은 농업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 경영주로서의 지위가 명확하지 못함.
 - 농지소유 비율이 낮음에 따라 각종 정책대상자 선정이나 정책자금 대출 등이 제한되고, 농업종사 경력도 인정받기 어려움.

- 여성들은 대개 남편과의 사별 등의 이유로 50대 후반 이후에 단독 경영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농의 주체적인 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시 보상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직업적 지위가 없어서 대다수 여성농업인들은 일반 가정주부(무급 가족종사자)로 평가받게 되고, 지역의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 농림어업 분야의 남녀 임금격차가 48%로 나타나고,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여성의 비율이 19.2%, 전체 후계농업인 중에서 여성농업인은 13.7%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현황과 문제점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 시 농업인 기준을 준용한 ‘농업인 확인제도’를 고시로 마련하고, 가족(농가)경영협약 제도를 마련
 -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도록 농림수산물부 소관 각종 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농정 및 수산 관련 위원회의 여성위촉비율을 확대하고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함.
 -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수협 조합원 가입을 유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영능력 및 리더 교육을 실시
 -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단체 교육 실시 및 우수 여성농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함.

- 다문화가정을 지원하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은 관련 법상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족경영협약 모델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농가)경영협약의 추진이 미흡하고, 홍보 및 교육이 부족함.

□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관련 정책

<일본>

- 일본에서는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과 함께 농업경영과 경제·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0년 12월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는 이를 수정한 제2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함.
- 일본의 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경영협정, 농촌여성의 네트워크, 농산어촌 여성의 날, 선진 여성농업인의 활동 고도화 지원, 여성농업인 지도자 대상 전문교육·연수 사업, 여성기업가활동 지원, 전문 여성농업인 양성을 위한 통신교육 강좌, 남녀 공동참가 관계 정보제공 강화, 여성인정농업자의 확대, 농촌여성 능력 향상 과정(개도국 농촌여성 지도자 대상), 농촌 여성조직에 대한 지원 등이 있음.
-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음.

- 가족경영협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의사결정 참여가 촉진되었으나 협약의 내용이 가족 간의 약속이므로 내용이 느슨하고 사회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유럽연합(EU)>

- 유럽의 경우, EU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여성종사자들의 문제와 지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각 국가별로 독자적인 정책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3; 박민선, 1999).
- EU의 여성정책 프로그램은 EU집행위원회에서 남녀의 차별을 제거하고 기회균등을 위해 행동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동프로그램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지역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유럽사회기금(ESF), 유럽지역발전기금(EFRE), 유럽농업시설과 보장기금(EAGFL), 어업기구보장기금(FIAG) 등이 해당하는 구조기금 프로그램이 있음.
- 유럽연합에서 대표적인 국가들의 여성농업인의 지위 규정 및 향상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프랑스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농업임금근로자, 농업경영주, 공동농업경영주, 가족종사자로 구분됨.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의료보험, 가족수당, 연금,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정도가 달라짐.
 - 독일은 농가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공동조사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고 있음.
 - 벨기에는 소유계약서 작성, 농지임차의 경우에 양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각 배우자는 수입과 지출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본인 전용 기계나 도구를 구입하여 스스로 관리하며, 공동구입 자재는 공동 소유함.
 - 네덜란드에서는 가족농업 보조자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

할 수 있도록 함. 즉, 경영주는 부인이 가족농장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조세 부담의 경감조치를 요구하거나 부인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덴마크의 경우 부동산 권리 증서를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공유, 재산, 수입, 부채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음. 가족농업 보조자로서 여성농업인은 세제상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이탈리아에서는 협력적 배우자들을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고, 가정근로자(domestic workers)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협력적 배우자의 기여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혼 또는 파산 시 협력적 배우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도 없음.

○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에 관해 국·내외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외국에 비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아주 낮음.

-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유럽보다 심함.
- 가족경영협약의 경우 일본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이제 시작단계임.
- EU국가에서는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라는 개념이 재정의되어 동거 및 동성 부부에게도 혼인을 통한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함.
- 프랑스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농업임금근로자, 농업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임.
- 유럽의 경우, 협력배우자는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 농업부문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관련 기준에 관해서 국내·외 비교를 해보면, 한국 및 일본은 농업부문에 있어서 공동경영주 관련 기준이 아직 없음. 다만, 가족경영협약(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의 경우, 공동경영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EU 국가들의 경우,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인정할 때, 농지소유 및 임차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로의 계약과 같은 형식적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협력배우자(*assisting spouse*)라는 개념을 재정의하여 공동경영주의 개념을 대치하여 사용하기 시작함.
 - 프랑스 농업사회보장기구(MSA)의 농업인(공동경영주) 인정방안으로는 ‘최소 자족 가능 면적인 SMI의 1/2 이상’ 또는 ‘1,200 시간 이상의 농업 노동 시간’을 적용하고 있음.
 - 독일은 농가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동경영주(공동종사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함.

□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 공동(농업)경영주의 개념 정의
 - 공동(농업)경영주는 ‘농사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을 경영주와 함께 공유하면서 영농활동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개념정의를 내릴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공동(농업)경영주는 ‘협력배우자의 자격으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인 및 경영주로서의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공동(농업)경영주의 인정 기준 설정
 - 공동(농업)경영주 인정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 1개의 필수요건과 여러 요건 중에서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선택요건으로 구

분할 수 있음.

- 필수요건: 연간 90일 이상 가족농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농업인확인제도’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
- 선택요건:
 - ① 자신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1,000㎡(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② 자신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의 농산물거래실적이 연간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③ 가족(농가)경영협약을 체결한 자
 - ④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개선된 등록양식에서 공동경영주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자신을 공동경영주라고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 ⑤ 농지원부제도의 개선된 등록양식에서 공동경영주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에서 자신을 공동경영주라고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 ⑥ 후계농업인으로 등록된 자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1개 절 정도를 할애하여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지소유, 농업경영 참여, 수익분배 등에 따라서 ‘농업인’의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형태의 농업인이 존재함을 명시

○ 가족경영협약의 확산 및 내실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가족경영협약에 대한 인정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족경영협약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협약 체결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가족경영협약’ 관련 현장전문가의 양성 및 체결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가족경영협약 체결 농가의 조직화 필요

○ 농가경영체 등록제의 개선

- 주민정보에서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농가경영체 등록양식 개선시, 공동경영주의 농업인 해당 여부 사항도 추가로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함.
- 향후 제정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농지원부제도의 개선

- 현행 농지원부에는 농가주에 관한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향후 농지원부 작성양식 개선시 농가구성원을 공동경영주, 가족농업보조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함.

○ 과세 및 재산소유제도의 개선

- 부부의 재산 형성에 여성농업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자산의 공동명의 또는 부인명의 이전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세를 추진
- 결혼 후 취득한 농지, 주택 등의 자산에 대한 ‘부부공동소유제’ 확립

○ 농업인 확인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2009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농업인 확인제도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공동(농업)경영주의 개념 및 관련 정책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부부 및 가족 간의 역할 분담이 좀 더 명확해짐으로 인해서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
-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됨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보험에서 독

립적인 가입자 및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단독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도 국민연금에 본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도 본인 명의로 정부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단독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도 본인 명의로 정부의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임.
- 농업정책자금의 지원을 ‘부부공동’ 또는 남편과 부인이 따로 따로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임.
- 대다수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위상이 보조적인 가족농업 종사자에서 당당한 직업적 지위를 가지는 공동경영주로서 격상될 것임.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의 직업의식이 강화되고 영농의욕이 높아질 것임.
-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있어서 보상수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불이익(예를 들면, 여성농업인을 일반 가정주부로 간주하는 것)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임.
- 현재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에 노출되었을 때 여성농업인이 일반 가정주부로 분류되면 보상액이 지역의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들이 시중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용이해지고 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임.
- 금융기관에서 독립적인 신용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이 많아질 것임.
 - 여성농업인의 신용도가 상승할 것임.

부록 1

일본의 제2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정책·방침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 국가의 정책·방침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
 - 지방공공단체 등에 있어서 여성의 채용·등용에 관한 지원·협력 요청
 - 기업, 교육·연구기관, 그 외 각종 기관·단체의 지원
 - 조사의 실시 및 정보·자료의 수집, 제공

- 남녀공동참여 시각에 입각한 사회제도·관행의 재검토, 의식개혁
 - 남녀공동참여의 시각에 입각한 사회제도·관행의 재검토
 -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계발 활동의 전개
 -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이해 촉진 강화 및 상담의 충실
 - 남녀공동참여 관련 정보의 수집·정비·제공

- 고용 등의 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와 처우 확보
 - 고용 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와 처우 확보대책 추진
 - 모성 건강관리 대책의 추진
 - 여성의 능력 발휘 촉진을 위한 원조
 - 다양한 취업요구에 따른 취업환경의 정비

- 농산어촌에서 남녀공동참여의 확립
 - 모든 장소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혁
 - 정책·방침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가 확대
 -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취업 조건·환경의 정비

- 여성이 살기 편하고 활동하기 쉬운 환경 조성
 - 고령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건 및 환경 정비
- 남녀의 직업생활과 가정·지역생활의 양립 지원
 - 일과 육아·개호의 양립을 위한 고용 환경의 정비
 -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응한 육아 지원책의 충실
 - 가정생활, 지역사회에서의 남녀공동참여의 촉진
- 고령자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의 정비
 - 고령자의 사회참가의 촉진·지원
 -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개호체제의 구축
 - 고령자의 소득보장
 -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립 및 생활 지원
 - 고령자 등의 자립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기반 정비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기반 만들기
 - 배우자 등으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자립 지원
 - 성범죄 대책의 추진
 - 매춘대책의 추진
 -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 추진
 - 스토키 행위 등에 대한 대책 추진
- 여성의 평생건강 지원
 - 생애기간의 여성의 건강 유지·증진 대책 추진
 - 임신, 출산 등에 관한 건강지원
 - HIV/에이즈, 성감염증, 약물남용 등에 대한 대책 추진

- 대중매체에서의 여성의 인권 존중
 -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 표현 추진·지원
 - 정부 행정기관의 홍보·출판물 등에서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함.

- 남녀공동참여를 추진하며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학습의 충실
 - 남녀평등을 추진하는 교육·학습
 -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학습기회의 충실

- 지구사회의 ‘평등·개발·평화’에 대한 공헌
 - 국제 규범·기준의 국내 도입·확산
 - 지구사회의 ‘평등·개발·평화’에 공헌: UN의 각종 활동에 협력, 국제적인 정책·방침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촉진, 국제 교류·협력 추진

- 새로운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남녀공동참여 추진
 - 과학기술
 - 방재(재해복구 포함)
 - 지역재건, 마을조성, 관광
 - 환경

부록 2

경작지에서의 가족노동(프랑스 사례)¹⁾

101. 다른 직업 활동에 비해, 농업 활동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03년에 경작인들과 그들의 가족 수는 농업 노동 인구의 72%를 차지했다.²⁾ 전체 경작 인구 중 가족이 아니면서 근로 소득자인 경우는 150,000명인데 반해, 가족인 경우는 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법은 이 근본적 수치를 농업 가족을 제대로 알고 그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농촌법은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경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가족이란 개념은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2006년 1월 5일 노동지도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지위는 여러 형태의 결합, 즉 법적 결혼 외에 동거나 사실혼으로 경영주와 결합을 한 파트너까지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Section I. 배우자의 상황

102. 농촌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지위는 어느 한 사람이 경영주 신분을 가진 다른 한 사람과 법적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결합이 되었을 경우에만 흥미로운 것이 된다.

이 배우자는 경영주의 농업에 참여하는가?: 농촌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외적

1) 프랑스의 『Droit rural』의 제3장 “LA FAMILLE TRAVAILLANT DANS L’EXPLOITATION”를 번역한 것임.

2) 인터넷사이트 www.agreste.agriculture.gouv.fr에서 2003년도에 실시한 「농업경작구조」에 대한 설문조사

인 직업 활동을 하는 배우자. 같은 상황에서, 빈번한 경우는 아니지만 각각의 배우자들이 그 상대 배우자의 경작지가 아닌 자신의 경작지를 소유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주기적이고 직업적인 방식으로 경작에 참여하는 배우자들의 이익을 확고히 하는 것이 농촌법의 입법 목적이다. 실제로 법은 경영주의 배우자에게 여러 지위와 특권을 부여하면서 부부 경작을 제도화하고 있다.

I. 법적·사회적 지위의 선택

A. 가능성들

1. 공동경영주의 지위

103. 공동경영주로서의 이 지위 선택은 사회적 경작지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GAEC(공동농업경영체) 혹은 EARL(유한책임농업경영체)에 속한 두 부부는 일반적으로 둘 다 경작인의 자격을 가진다. 개인 경작지 안에서도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특히 경작지가 공공 또는 공유 재산인 경우, 혹은 부부들이 경작용 토지의 공동 임차인인 경우가 그렇다.

개인 경작지 안에서 단순 협력의 상황과 공동경영(경작)의 상황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L321-1 조항에서 보면, 하나의 경작지 안에서 같이 영농을 하는 부부들에게, 모든 형식적 기준이 부재하는 현 상황에서 공동경작이 자산심판 시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는 가치가 되는가 하는 질문을 남긴다³⁾. 토지 소유와 경작을 위한 소품들, 공통 임차인의 권한, MSA(농업사회보장기구)에 우수한 경영주로 인정받은 등록서류, 제 3자에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 등은 공동

3) RD rur 1998년 판의 p 207에 나오는 1997년 1월 28일의 첫 Cass Civ(파기원 민사 판결)에 대한 F.Roussel의 견해

경작을 하는 다른 이들 사이에서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가정하에서 공동경작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나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서로의 동등성을 명백하게 해주는 것이다⁴⁾.

104.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L321-1조항에 의해, 개인 경작지에서 공동경작을 하는 부부 사이에 설립되는 상호 위임 추정으로 해석되는 명백한 평등인 것이다: 두 부부가 같이 하나의 경작지 안에서 일을 할 때 그들은 경작에 필요한 행정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위임을 상호적으로 받는다. 각자가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그들 각 배우자의 위임자이므로 부부 재산의 전부가 제3의 계약자에게 담보로 저장잡혔을 때 그들은 단지 그들 스스로가 한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대 배우자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공동경영주의 지위는 경작을 위해 행해지는 활동들과 같은 행정적 행동들의 제한 속에서, 두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저한 유연성을 보장한다⁵⁾.

공동경영주의 지위에 연결된 이 합법적 위임은, 서로 더 이상 결합의 상태가 아니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부재인 경우, 별거 중인 경우, 법적 재산 분할(L. 321-2 조항)이 있을 경우에, 법적 절차에 의해, 혹은 부부가 각자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L. 321-2 조항은 그래서 부부 각자는 신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신고에 의해 정식으로 소집되거나 출석한 각 상대 배우자는 더 이상 L. 321-2 에 나와있는 조항들을 행사할 수가 없다. 무효화 하자마자 그에 대한 신고는 공증화되어야 하고 혼인 신고서 외 다

4) 협력자와 공동경작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RD rur 1981년 판 p 239에 나오는 P.Remy의 「농경과 부부의 시민적 지위」, JCP N 1981년 판 I p155에 나오는 J F.Pillebout의 「농경하는 부부의 지위」, RD rur 1984년 판의 p 1에 나오는 C. Pipat Giraudel의 「농경과 여성의 지위」, Defrenois 1981년 판의 p 561에 나오는 A. Lassaubatjeu의 「농경하는 부부들의 지위」, RD rur 2003년 판의 p 542에 나오는 E.Benedetti의 「개인 경작에서 경작인의 배우자 지위」들을 참조 하시오.

5) 추정에 의해 보호된 행동들에 관련하여, 이미 인용된 조항들 외에 A.KARIM의 Dufrenois에서의2004년 N55판의 「부부 기업」 참조하시오.

른 문서들에도 기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는 조건 하에서 공식 선고 후 3개월 뒤에 그 효력을 기대할 수 있다.

105. 사회적 측면에서, 부부는 MSA에 경영주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고 만일 개인 경작지인 경우라면, 경작지 면적이 최소한 SMI(L. 722-5조항)의 반절에 해당되고 두 부부가 이 경작지에서 경작지 소유자 혹은 임차인이라는 조건 하에서, 농업을 업으로 하는 비근로소득자 정책의 해당자가 된다.

만약 두 부부가 한 회사 안에서 공동 경작을 할 경우, 회사는 최소한 그 회사 원 수를 곱한 SMI의 반절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그들에게 할당한다. 따라서 부부 각자는 모두 분담금을 낼 의무가 있고 농업인 비근로소득자 법규에 따른 모든 수당을 받게 된다.

2. 경영협력자의 지위

106. 이 지위는 개인 경작지에서 경작을 하거나 회사에 소속되어 경작을 하는 사람의 배우자(배우자 본인은 회사에 소속되지도 않고 공동 경영을 하지도 않는)에게 주어지는 지위다. L. 321-5조항에 의해 규정된 조건들은 부부 각각에 부여되는 조건들이 비 동등적임을 보여준다: 한 사람은 모든 특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진 경영주이고 그 상대방은 단지 뒤에서 협조만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협력이 아마추어적이지는 않다: 그 협력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지는 못하지만 효과적이고 일상적인 노동에 해당하는 직업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바로 협력과 공동경영을 구분하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갖게 된다.

107. 법률적으로, 경영협력자의 지위는 협력적 배우자가 L. 321-1 al 2 조항에 의해 설립된 위임가정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용되지 않으면서도 경작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동경영의 그것과는 상반적으로, 이 위임은 단지 한쪽에만 발생하는 편 무적인 것이고 협력 배우자는 경작을 하는 그 상대 배우자의 대리인인 것이다. 이 법적 위임은 그렇게 이 협력적 배우자에게 경작에 필요한 관리적 행위에 제한을 두면서도 계약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일정한 직업적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⁶⁾.

108. 경작을 하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협력자는 지난 노동에 대해 현재 미지급된 보수에 대한 채권자의 자격을 이어받게 된다.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병합적인 조건들에 달려 있다(L. 321-21-1조항):

- 배우자의 영농 활동 혹은 그 배우자가 꼭 연속적은 아니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몸담은 회사 안에서의 영농활동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왔어야 한다. 이 협력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협력이란 규정할 수 있는 조건들에 맞추어서 충분히 직업적 활동으로 여겨져야 하고 협력의 목적이 경작에 있어야 하며 수공작업 혹은 관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아야 하고, 영농으로 인한 손실이나 혜택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재산 분할 범위 아래, 결혼한 협력적 배우자에게 미지급된 채 미루어진 보수에 대한 권리로 보인다⁷⁾.

게다가 영농하던 배우자의 유족인 상대 배우자만이 이런 잠재적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먼저 사망할 경우나 이혼할 경우에는 이 권리가 사라진다.

이익 제한에 있어서의 이중적 상한점: 채권은 상속 자산의 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SMIC(최저 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순자산에 관계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협력자의 채권이 그 상속권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추가한다면 우리는 그 채권이 가져올 이익은 미미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109.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2006년 10월 25일의 법령⁸⁾에 따라 협력자의 지위에 대한 선택은 MSA에 통고되어야 한다. 이 통고는 경영주의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단지 협력적 배우자만의 서명에 의해 성립된다. 이 신고는 경작자의 영농활동 혹은 배우자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에서의 활동에 보수를 받지

6) 상기 104항 참조하십시오

7) 이 조건에 관련하여, RD rur 1999년 판 350p에 나오는 R.Le Guidec이 쓴 「경작자의 배우자 지위에 관련한 1999년 7월 9일 법령의 기여사항」를 참고하십시오.

8) 법령 2006-1313, 2006년 10월 27일의 JO, N250, p 1592

않고 참여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협력적 배우자의 신고가 동반되어야 한다. 회사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첫 번째 일반적 회합 자리에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또 다른 동료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 321-1, I 조항).

협력자는 개인적으로 그 상대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지불했던 사회보장성 각출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농업인 비근로소득 수입자들의 질병·육아 보험, 연금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10. 1999년 7월 2일의 법에 의해 시작된 이 지위는 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라는 예전 지위를 대체한 것으로 2000년 5월1일 이후로 이 지위는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도급 연금에 대한 권리(L. 732-34조항)를 가리게 한 이 지위는 이전에 경작에 대한 협력적 배우자란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어 가고 있다.

3. 임금 근로자의 지위

111. 한 배우자는 물론 그 상대 배우자가 경영인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임금 근로자일 수도 있다. 만일 경작지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경작에 직업적이고 일상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SMIC(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최저 시간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조건 하에 그 배우자로부터의 임금 근로자가 될 수 있다(L. 784-1조항)

이 지위의 선택은 1998년 4월 1일의 법령을 적용하면서 경영주에 의해 신청된 유일한 고용 신고로부터 생겨난다⁹⁾. 그래서 그는 노동권리를 적용받을 혜택을 갖고 농업 임금 근로자 법규의 사회적 관점에서, 고용인에 의해 지불된 각출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

9) 고용 단독 신고에 관련한 1998년 4월1일의 법령 N98-252

B. 선택 의무

112. 2006년 1월 1일까지, 농경작인의 배우자는 모든 지위 밖에 있으면서 자주 경작 일에 참여를 했고 이런 협력은 가족의 상호 보조였던 것이다. 물론, 비형식화된 협력은 L. 321-1조항의 적용에 따라 배우자에게 그 상대 배우자의 대리인 자격을 주었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경작 일에 참여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임차와 관련된 것과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가지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위 선택에 대한 부재가 사회적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부부관계의 소멸, 특히 이혼의 경우에는 극적으로 힘들어 질 수 있다는 게 명백했다.

2006년 1월 5일 법에서 L. 321-5조항을 수정하면서 배우자에게 다음 3개의 지위 협력자(공동경영주), 근로 임금자, 또는 경영주 중 하나의 지위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연금 등과 같은 고유 권리를 주면서 그 상대 배우자의 지위와는 달리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의 지위를 주고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¹⁰⁾.

이 의무는 경작지 혹은 기업체 안에서 주기적으로 직업적 활동을 하는 모든 배우자에게 해당되는데 단 2000년 5월 1일 이전에 이미 L. 732-4조항에 의거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이다.

113. 이처럼 2006년 10월 25일 법령에서 나온 새로운 R. 321-5조항이 상세화 하듯이¹¹⁾, 선택은 MSA에 낸 신고에 의해, 3개의 지위들 중 하나의 선택을 가 사회화 주는 형식화의 구현에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다¹²⁾.

10) RD.rur 2006년 판 37p에 쓴 T.Tauran의 「농업인 들의 사회 보장을 위한 농촌 지도 법의 영향력」

11) 앞에서 이미 상술했음.

12) 협력자 지위를 선택하고자 하는 MSA로의 통지, 공동 경영주 지위를 선택하고자 농업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비 근로 소득 수입자 정책으로의 가입 혹은 근로 소득자 지위 선택을 위한 고용 단독 신고

II. 배우자의 특권

114. 지위와는 관계없이, 입법자는 한 경영주의 배우자에 의해 제공된 노동을 이 배우자에게 여러 특권을 주는 것으로 그 노동을 인정해 주려 한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의지와 가족 경작의 영속을 지키고자 하는 우려와 관련이 있다¹³⁾.

115. 이처럼 농촌에서의 임차인들의 지위는, 임차인의 배우자를 그 임대인에 의해 임대된 토지의 선매(L. 412-5조항), 생전 혹은 사망(L. 411-34조항)의 경우 임차의 양도 결합(L. 411-35와 L. 411-64조항)의 잠재적 수혜자로 하는 것이다.

공동 임차인이던 그 상대 배우자가 떠남에도 불구하고, 경작지에 남은 배우자에게 임차 갱신의 권리(L. 411-46조항)를 주고 좀 더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배우자에게 공동 경작지로 쓰이는 곳에 대한 임대차 감독권과 작업의 무효화 시 갱신 포기나 양도, 해제 등에 대한 승낙권리를 준다(L. 411-68조항). 이 권리는 정년 퇴임 후 계속해서 빌린 토지에서 경작활동을 하는 배우자에게까지 확장된다¹⁴⁾.

임대인의 배우자는 임차가 끝났을 때 (L. 411-58조항) 혹은 소유주인 그 상대 배우자에 의해 실행된 재 임차에 대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116. 게다가 직업적 주요 기구(협동 조직, 상호 조직, 농협)들 안에서의 상호적 대표가 되는 권한 또한 L. 321-4조항에 의해 같은 경작 일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배우자들에게 주어진다.

117. 공동경영주, 임금 근로자 혹은 협력자 자격으로 5년 동안 그 상대 배우자의 경작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그가 관리법규에 의해 인정된 직업적 능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인데 이것을 밝혀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R. 331-1조항).

13) Petites affiches지 1999년 84호 58p에 실린 F.Roussel의 「경작, 가족과 농촌 법」

14) RD rur 2000년 판 128p에 나오는 2000년 2월1일 Cass crim(과기원 형사 판결)

Section II. 경영주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혹은 동거인인 배우자의 지위

118. 현재까지 그들은 2006년 1월 5일자 법에 의해 농촌법안에 첫 등장을 한 다 법령의 제 3책자, 첫 장의 1절의 첫 아래 절 안에서¹⁵⁾, 그때까지는 ‘정식 결혼한 부부 관계라 불리던 것이 사실혼 관계 혹은 동거에 의해 결합된 사람들’이라 칭해지기 시작했다. 동거인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이 정식 결혼한 부부 관계에 있는 배우자들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119. 한가지는 명확하다: 경영 협력자의 지위는 L. 321-5조항에 마지막 문단 하나를 더 추가함으로써 위에 언급된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L. 321-5조항에서 보여지는 모호함으로 인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한 지위의 선택권은 동거인 혹은 파트너를 위한 요소인 것이다. 이 의무 조항을 구체화해 놓은 2006년 10월 25일자 법령에서 나온 R. 321-1,II조항에서는 사실, 정식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에게만 효력이 있었던 반면에, 지위의 선택에 대한 조건을 구체화한 R. 321-1,I조항은 명백히, 정식 결혼에 의한 배우자, 동거나 사실혼으로 결합된 파트너 관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관련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경작의 협력자 지위를 선택하게 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동거인 상태에 있는 이들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보호와 L. 321-5조항이 규정하는 여러 특권들의 혜택을 가질 수 있다: 농업인 비근로임금 수입자들의 노후 보험, L. 321-21-1조항에 의해 배우자에게 마련된 미지급 급여에 대한 권리¹⁶⁾. 이 채권에 관해서는, 채권에 대한 권리는 정식 결혼에 의한 배우자 보다는 파트너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넓게 열려 있는데 부부 재산제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경작 결과물에 대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15) RD rur 2006년판의 etude 21코너에 쓴 R.Le Guidec의 「부부, 농경. 지도 법 도입에 의한 농촌법의 근대화」

16) 반대 의미로, 2006년 판 Dr.Fam 86에 H.Bosse-Platiere가 쓴 「농촌 법과 연대성에 대한 시민 협약」을 참조 하시오.

120. 반대로, 동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L. 321-1조항에 의한 위임의 추정적 인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문항이 「정식 부부 사이, PACS(사실혼)과 동거로 인해 결합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부분에서 모든 조항들이 위에 열거된 그들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언급한다면, 이 문단에 쓰여진 배우자와 그 상대 배우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에 반박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법규는 이 부분에서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21. 게다가 2006년 1월 5일의 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게 다른 관련 조항들과 다르게 변형되지 않은 L. 411-68조항의 임차 처분에 대한 결정 승낙을 요청 할 수 있는 의무만을 제외한 임차인 혹은 임대인의 배우자에게 농촌 임대차 권리의 특권(이양, 양도, 선매 혹은 임차 이득의 차지)¹⁷⁾이라는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

Section III. 부모들과 친 인척들의 지위

농촌법은 농업경영주의 후손과 그 후손들의 배우자에게, 미지급된 보수에 대한 권리를 추가 부여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특별 지위를 줌으로써 경영주의 친 인척 가족들에 의해 행해진, 경영을 위한 노동을 참작하고 있다.

I. 지위들

실질적으로는 아주 드물게 사용되고 있는, 임금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외에, 두 가지가 다 선택될 수도 있다: 하나는 근본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가족적 보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좀더 고심하여 구상되었지만 흔하지 않은 것으로 공동경영주가 있다¹⁸⁾.

17) 앞에 나온 115항의 배우자 특권을 참조 하시오.

18) JCP N 1974년 판 I 2655에 나온 G.Bobin의 「가족 협조와 공동 경작인」

A. 가족적 보조

123.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16세 이상의 후손들, 조상들,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경영주와 같은 급의 인척들에게 그들이 경작지에 살면서 비노동근로 임금 수입자로서 경작에 참여하는 (L. 722-10,2 조항) 순간부터 주어지는 부차적 지위인 것이다.

L. 732-34조항은 실질적으로 경작지에 사는 가족의 일원을 위한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조항을 표시한다. 이런 협조는 일종의 직업적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그것은 파트타임으로 하는 또 다른 직업적 활동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경작에 필요한 수공적 혹은 관리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족적 보조에는 그 어떤 보수의 지급이 따르지는 안 된다.

경영주와 일가 친척 관계에 있을 때 생겨나는 이 지위는 경작지가 회원 가입이 되어 있을 때는 항상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경영주 권한을 법인에게 한정하는 법인체 혹은 EARL 안에서는 제외되는 것인가? 반대로 GAEC 안에서 이 지위는 부모들이 각 회원의 친·인척들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2006년 1월 5일 법은 그 날 이후로 2005년 5월 18일부터 가족적 보조를 주는 사람은 더 이상 그 권한을 5년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가족적 보조의 지위를 하나의 임시적 지위로 언급하고 있다¹⁹⁾. 이런 제한에서 입법자는 공동 경작자 혹은 근로임금 수입자의 지위에 따라 위에 언급된 지위들을 더욱 더 보호되는 지위로 장려하고자 한다.

124. 가족적 보조를 주는 이들은 농업인 비근로임금 수입자의 질병, 육아, 양로 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L. 732-34조항과 L. 732-42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언급에 대한 권리도 갖는다. 만일 소유한 토지로부터의 소득이 어느 일정액 아래일 경우에는 RMI에 대한 권리도 갖는다.

19) 2006년 1월 5일 법 21조항에 의해 변형된 L722-10, 2조항

125. 게다가 직업적 교육을 받고, 그가 참여하던 경작활동의 중단이 있었을 시 경영주의 직업적 복귀를 위한 도움을 받으면서 농업회의소, 선거시 유권자 및 피선거권(후보자)자의 권리도 갖게 된다.

126. 경작자 사망 시, 친인척 관계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나누어 가질 재산에 대한 권리에 따라 그가 경작을 위해 참여한 활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미지급된 보수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경작 활동을 위해 이루어진 노동을 가치화할 수 있다.

B. 공동경영주

127. 앞에서 본 것 보다 훨씬 더 완전한 이 지위는 젊은이들의 정착을 장려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과도적 지위라 할 수 있다. 이 지위는 후손들, 형제, 자매들과 경작 경영주 혹은 그 배우자와 같은 급이면서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친·인척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기혼인 23세 이상의 공동경영주는 2년 안에 경영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L. 321-12조항에 의해 공동경영주로서의 권한을 간직할수 없다. 게다가 L. 321-6조항은 경작을 위한 성격의 노동 활동은 근로 임금 노동자가 아니면서 공동경영주의 주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한다.

128. 이 지위의 내용은 가변적이다: L. 321-7조항과 그 다음 조항에 의해 규정된 절대적이고 합법적인 규율은 그리 많지가 않다. 그러나 그 규율들은 공동경영주가 25세가 되면서부터(L. 321-10조항) 갖게 되는 상여금 지급과 직업 교육에 관련한 권리합의 조항들에 의해, 혹은 이 협약으로의 확고한 가입에 의한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협약의 적용에 의해 완전해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가족적 보조에 인정된 권리 외에 이 지위는 공동경영주에게 최저 임금 수당에 대한 권리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129. 보수 지급에 관하여, 합의 타입의 적용이 없을 경우, 보수 지급은 도급적이고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L. 321-9조항)²⁰. 협약 타입의 적용은 공

20) 1984년 1월 23일 법령 이후로, 그 총액은 매월 850프랑이다(129.5유로)

동경영주에게 규정에 따른 월 수당금 이하인 경작 성과물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 혜택을 준다. 이 보수는 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차후 청구 시 장애물로 작용되지는 않는다: 단순히 수당 외에 지급된 액수는 채권에서 공제될 것이다(L. 321-11조항).

130. 경영주의 부담인 교육은 3년 동안 최소 18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한번 혹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131. 합의 가입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합의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협약은 두 사람 중 한 명의 발의에 의해 파기 통보가 될 수도 있다.

II.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보수

132. L. 321-13조항과 그 다음 조항은 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의 경작지에서 일을 한 농업경영인의 후손들은 그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제 날짜에 지급되지 못한 보수 지급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데 이 권리는 그들의 상속권의 하나로 추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이 후손들은 마치 그들의 선조들과 미래에, 제공될 노동에 대한 도급적 지급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노동계약을 맺은 것처럼 되는 것이다. 여기에 기인하여, L. 321-13조항에 따르면, 합법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후손들은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보수에 대한 노동계약상 합법적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법률상의 약속은 두 당사자들의 관계와 노동의 합법화와 노동 계약을 관리하는 법칙들에 대한 모든 적용을 명백히 제외시키는 L. 321-20조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경작지에 남은 후손들에게 인정된 이 채권은 한편으로는 보수를 받지 않고 노동을 제공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 형제 자매들이 더 이익이 되는 다른 활동을 찾아 이탈하는 것을 막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공동 상속인에게 지불되어야 할 보조금을 약화시키면서 후손들에 의한 가족 재경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A. 상속인들

단지 경작인의 후손들과 그 후손들의 배우자만이 수익 상속자에 해당한다.

1. 후손들

133. 일가 친척 중에서 그 혈통이나 장애인 여부에 상관없이 이 지위를 받는 다²¹⁾. 마찬가지로 단독 후손일 경우에도 그러하다. 먼저 죽은 후손의 채권은 조건과 양도세 없이 모든 다른 상속인을 제외하고 그의 생존 자녀들이나 그 동등 자격의 이들에게 전달된다²²⁾. 어쨌든 보수의 채무가 있는 선조가 농경 활동을 포기할 경우, 그 이양은 그의 사망 시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자녀들이 농경지에서 이미 일을 하였거나 아직도 학업 의무를 가지고 있거나 채권 지불 당시 농업 관련 학업을 받고 있을 때에도 그러하다(L. 321-18조항).

2. 후손들의 배우자

134. 후손들의 배우자 권리는 그 후손들의 권리에 종속된다. 왜냐하면 L. 321-15조항에 의해 이 권리를 경작 활동에 참여한 후손들 중에서 그들의 배우자에게만 주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은 이런 자율성 결여를 보충하기 위해 그의 부모의 경작에 그 후손과는 별개로 혼자 참여한 배우자에게 재산 증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준다²³⁾.

21) JCP N 2003년 판 1231에 나오는 2002년 6월2일 Montpellier Ire Ch sect AO2에 대한 M.O.Gain의 견해

22) JCP N 2003년 판 p 1341에 나오는 2002년 11월 19일 Cass Civ(파기원 민사 판결)에 대한 B.Grimonprez의 견해

23) GTDCiv 1996년 판 p 215에 나오는 1995년 3월 14일 Cass Civ(파기원 민사 판결)에 대한 B.Grimonprez의 견해와 1996년판 p 137에 나오는 것에 대한 V.Barabe-Bouchard의 주석

파기 시엔 후손의 배우자는 이혼이나 결별이 공지 되었을 때에만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즉 2004년 5월 26일에 생겨난 이혼 개정부터 적용된다.

후손의 사망 시엔 경작 활동에 참여한 그 후손의 배우자는 그가 홀로 남겨지기 시작한 날로부터 해서 미지급된 보수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고 그가 결혼으로부터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고 그 자녀들 중 막내가 아직 18세 미만일 경우 혹은 막내가 교육 기관에서의 학업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권리를 갖게 된다(L. 321-16조항).

B. 조건들

1. 채무있는 농업 경영인으로서의 신분

135. 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채권의 승인은 우선 농경작인 자격의 선조를 위해서 후손 혹은 후손의 배우자가 경작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농촌법 L. 311-1조항 안에 규정되어 있는 성격의 농업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뜻한다.²⁴⁾ 부채는 그 선조 개인적인 것이고 경작지가 부부 공유 재산일 때에도 채무 상속이 된다. 부모가 둘다 경영주 신분이었다면 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채무는 유일하고 채무 상속에 대한 의무는 승계된다²⁵⁾. 상속자는 이렇게 그 부모들 중 첫 사망이 있을 시부터 그 지분을 강요받거나 반대로 두 번째 사망 시부터 강요받게 된다²⁶⁾. 그 선택이 무엇이건 간에 그 총 액수는 첫 사망의 순간부터 정확하게 법에 의해 결정된다²⁷⁾.

24) JCP N 1997년 판 p 1234에 나오는 1996년 7월 10일 첫 Cass Civ(파기원 민사 판결) 에 대한 R.Le Guidec의 견해

25) JCP N 1997년 판 p 1234에 나오는 1996년 7월 10일 첫 Cass Civ(파기원 민사 판결) 에 대한 R.Le Guidec의 견해

26) 첫 상속처분 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 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사망이 있기 전까지는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JCP N 2006년 판 p 1512에 나오는 2005년 9월 21일 첫 Civ(민사 판결) 에 대한F.Roussel의 견해

27) 앞에서 이미 상술한 1995년 11월 7일 첫 Cass Civ(파기원 민사 판결)

경작인의 변화가 있을 시 또는 아버지가 사망 한 후 어머니가 경작지를 이어 받을 시에 그들 중 첫 선조 경작인으로부터 파생된 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계약이 두 번째 선조에게로 간다. 그러나 그것은 단독 보수이고 모든 가정 하에 그 이상 일을 했더라도 10년 이하까지의 노동에 대한 보수만 받게 되는 것이다²⁸⁾.

2. 상속자에게 의무 지어진 경작에의 참여

136. 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가 농업 성격을 띠는 일을 농경지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파기 원인은 수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행해진 가사노동으로는 이런 미지급된 보수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못 한다고 평가했다²⁹⁾.

둘째로, 경작 협조가 설령 또 다른 직업적 활동을 배제 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것이어야 하지 단순히 우연에 의한 우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³⁰⁾.

137. 게다가 이 협력은 무 보수적인 것이어야 하고 L. 321-13조항은 그 후손이 그 어떤 이득과 손실에 연관이 되지 않고 그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인 보수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런 보수의 미 지급 사항이 반드시 절대적 필요 사항인 것은 아니다. 공동경영주에 의해 받아 들여진 수당³¹⁾이 미지급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위태롭게 하지도 않고 단순 성격의 용돈이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공받은 식량이나 거주 시설들은 정식 보수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138. 미 지급된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은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은 이런 조건들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증언, MSA로의 신고, 여러 문서들

28) Defrenois 1997년 판 p 1094에 나오는 1997년 1월 28일 첫 Cass Civ(파기원 민사 판결)에 대한 G.Champenois의 견해

29) D 2002년 판 IR, 3062에 나오는 2002년 10월 22일 첫 Cass Civ(파기원 민사 판결)

30) 1970년 3월2일자 Cass Civ의 D 1970.301에 대한 A.Breton의 주석

31) 앞에 이미 나온 129항을 참조하십시오.

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 L. 321-19조항은 이런 증명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매년 시청에 그들이 영농 관련 일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고를 할 것을 장려한다.

C. 총 액수

139. 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채권은 그것이 생존해 있는 채무 경작인에게서 기인된 것이라면 최저 시간 임금을 참조하여 정확히 지급되어야 할 날짜에 지급이 되고 지급이 그 상속 개시 후에 되면 상속 분할 날짜에 지급된다. 상속자는 경작 참여 매년 최저 시간 임금액수의 2080배에 해당하는 총액의 2/3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L. 321-13 al 조항). 실제로 이 채권의 총액은 두 배로 책정된 것이다. 채권자가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행해진 농업 활동에 대한 연수만이 인정되는 것인데 특히 그것이 10년 이상 일지라도 최고 10년까지만 계산된다(L. 321-17조항).

D. 지급

140. 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채권은 경작 선조의 사망이 있을 경우나 부모가 둘다 공동 경작인이었을 경우에는 그 둘 중 한 사람의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생겨난다. 그렇지만 L. 321-17조항은 배당 증여의 경우에는 선조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³²⁾. 증여가 선취권에 관한 것이고 양 편 모두의 의도가 명확한 경우 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채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³³⁾.

32) Bull civ I 의 254번에 나온 1997년 7월 16일의 첫 Cass Civ

33) Bull civ I, 2005년 판 의 153번에 나온 2005년 3월 22일의 첫 Cass Civ(파기원 민사 판결). 이 지급방법은 그 지급에 대한 타당성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해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다

141. 사망 시, 결정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채권이 발생된다. 채권은 상속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후손은 상속 채권자로 그리고 비 상속인으로 처신한다: 그렇게 보수 지급을 요청하면서 상속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142. 이 지급은 금전적으로 혹은 토지, 건물, 가축 등의 경작지 재산물의 수여로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농촌 임차 시장 가격의 부재는 후손의 채권 상속 시 후손에게 이득이 되게 하기 어렵게 한다³⁴).

143. 지급의 방식이 어떻든 간에 그 지급이 채권자에게 등록세(L. 321-14 al 2조항) 혹은 소득세의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L. 321-13 al 3조항).

34) Defrenois, 1992년 판 의 p 517번에 나온 1992년 1월 7일의 첫 Cass Civ(파기원 민사 판결)에 대한 X.Savatier의 주석

부록 3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통합신청용)

구 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주민등록지 주소					

(경 영 주 성 명 :)

- ※ 본 신청서는 경영체가 예비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본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 뒷 면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일반현황

①경영주	성명		농장명		주민등록번호	-
	②주소	주민등록지	(-) 기재생략			
			마을이름 :			
	실거주지	실거주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통)			
			(번지)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전자우편		
③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④경영주의 세대원중 농업종사자	성명	⑤경영주와 관계	성명	⑤경영주와 관계		
⑥경영주의 농업인 해당 여부 (해당 항목에 모두 ○표)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⑦대표품목	농작물(임산물)		재배면적(㎡)			
	축산물		⑧사육마리 수(군)		사육면적(㎡)	

3.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m ²)	⑰ 용도	⑱시설 소유/비소유 여부	⑲가축 종류	⑳경영형태 (자영·수탁)	㉑축사 총 면적(m ²)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1												
2												
3												
4												
5												

4. 가축 사육규모

구 분	⑳총 사육 마릿수	㉓지난해 총 출하 마릿수		㉔지난해 총 납유량(kℓ)
		성 축 (7개월 이상)	자 축 (7개월 미만)	
한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우				
젖소				

구분	총 사육 마릿수	㉕ 지난해 총 출하 마릿수		구분	㉖ 총 사육 마릿수			㉗ 지난해 총 출하량(공급량)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종돈업				산란계					천개
					육용계					천수
				오리				kg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총 사육 마릿수	구분	총 사육 마릿수	
㉘ 기타 가축	산양(염소)		말	
	면양		노새	
	꿀벌(군)		당나귀	
	토끼		오소리	
	사슴		뉴트리아	
	개		지렁이(면적(m ²))	
	거위		타조	
	칠면조		꿩	
	메추리		㉙ 관상용 조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업·농촌 관련 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신청서에 작성한 자료는 농업경영체 육성 목적 이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위 농업경영체의 주민정보, 농지 및 축산정보, 임대차정보, 인증정보, 정책자금 지원정보, 영농교육정보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작성된 개인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 등 맞춤형농정추진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경영주)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기재요령

<1. 일반현황 기재요령>

①란의 경영주는 농업경영체 경영 의사결정 주체로 일반적으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경영주가 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을 기재하고, 농장명은 있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②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겉표지에 주민등록지 주소를 작성한 경우는 기재를 생략**하며,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실거주지 변경시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지(전화 등)하여야 합니다.

③란의 경우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세대원(배우자 포함)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인 가구원을 기재합니다.(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인·학생·환자 등은 제외)

* 농업인의 요건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⑤란은 부, 모, 처, 자, 자부, 남편, 사위, 시부, 시모, 형제, 자매 등으로 기재하며, 그 외 경영체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기재합니다.

⑥란은 경영주의 농업인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모두 ○표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농작물(임산물), 축산물 중 소득이 높은 것 하나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농작물(임산물)의 경우는 소득이 가장 많은 품목과 그 품목의 “재배면적”(자경·임차·수탁 모두 포함), 축산물의 경우는 소득이 가장 많은 가축종류와 그 가축종류의 “사육두수 와 사육면적”(자영·수탁 모두 포함)을 각각 기재합니다.

* 자경 :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자영 :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축사에서 본인소유의 축산물을 사육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농지를 빌려서 농작물(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수탁 :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농지(축사)를 이용하여 계약에 의해 일정한 대가(수수료 등)를 받고 타인의 농·축산물을 생산해 주는 농업경영 형태

⑧란은 작성일 현재 기준으로 대표품목 축산물의 총 사육 마리수(군·㎡)를 기재합니다

<2. 농작물(임산물 포함) 생산 기재요령>

- ⑨란은 농업에 이용되는 실제 지목을 기재합니다.
- ⑩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형태를 자경,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자경 :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 단, 경영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자경”으로 기재합니다.
- ⑪란은 해당 지번의 농지가 언제든지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지력증진·노동력부족·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지번)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 ⑫란은 해당 지번의 농지가 자연재해나 용도 전환·전용 또는 장기간 방치 등으로 사실상 경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특별한 복구작업(성토, 객토, 농·배수로 개선, 정지작업 등)을 하지 아니하고는 사실상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지번)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 ⑬란은 신청서 12페이지 “등록품목 농·축산물(임산물 포함) 예시”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월동작물(보리, 마늘, 양파, 유채 등)의 경우 지난해에 파종하여 금년에 수확한 경우는 금년도 품목에 포함하고, 금년에 파종하였으나 다음해에 수확하는 경우에는 금년도 품목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 재배하거나, 여러 품목을 재배할 경우 칸을 분리하여 기재합니다.
 - 동일한 필지에 한 품목을 년 2회이상 재배할 경우에도 그 횟수만큼 칸을 분리하여 기재합니다.
- ⑭란은 ⑬란의 재배품목에 대한 재배면적을 노지,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다년생 작목이면서 당해연도에 수확하지 않은 경우는 “농지소재지”부터 ⑭란까지만 작성하고 ⑮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⑮란은 실제 수확한 면적이나 금년에 수확할 면적을 기재합니다.
- 작물이 재배되어 있으나, 금년에 수확하지 않은 경우는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예 : 인삼 등 다년생작물, 미과수)
- ⑯란은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농지를 이용하여 계약에 의해 일정한 대가(수수료 등)를 받고 타인의 농작물을 생산해주는 경우 “○”표를 기재합니다.

<농작물(임산물 포함) 생산 작성 예시>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⑩경영형 태(자경 ·임차)	농지면적(m ²)			⑬재배 품목	⑭재배면적(m ²)		⑮실제 수확면적 (m ²)	⑯ 수 탁
	시 도	시 군	읍 면	리 동	지 번	공 부	⑨ 실 제		공부 상	미이용			노지	시설		
										⑪휴경	⑫폐경					
1	경 기	포 천	00 00	12 -1	논	논	자경	1,0 00			논벼	1,000		1,000		
2	경 기	포 천	00 00	12 -2	논	논	자경	1,0 00			논벼	1,000		1,000		
3											보리	1,000		1,000		
4	경 기	포 천	00 00	12 -7	밭	밭	임차	2,0 00			대파	1,300		1,300		
5											참깨	500		500		
6											호박	200		200		
7	경 기	포 천	00 00	12 -8	밭	밭	자경	1,0 00			양 송 이 버 섯		1,000	1,000		
8											"		1,000	1,000		
9	경 기	포 천	00 00	12 -5	논	논	자경	1,0 00			논벼(증자)	1,000		1,000	○	
10	경 기	포 천	00 00	33 -5	밭	밭	자경	2,0 00			상추		1,000	1,000		
11											시금 치		1,000	1,000		
12	경 기	포 천	00 00	산 1-7	임 야	과 수 원	자경	3,5 00		500	사과	3,000		2,000		
13	경 기	포 천	00 00	37 -1	밭	밭	임차	1,0 00			인삼 (1년)	1,000		0		

등록대상 농·축산물(임산물 포함) 예시

※ 아래 예시된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해당 품목을 기재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품목군	품 목 (215개)
쌀(2)	벼(논, 밭)
일반밭작물 (21)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옥수수, 수수, 조, 메밀, 기장, 울무, 감자(봄감자, 가을감자), 고구마, 야콘 등
채소(57)	무(봄, 고랭지, 가을, 겨울, 알타리무), 열무, 순무, 당근, 우엉, 연근, 토란, 배추(봄, 고랭지, 가을, 겨울, 얼갈이), 양배추, 시금치, 상추, 썩갯, 미나리, 깻잎, 부추, 신선초, 갯, 근대, 아욱, 청경채, 냉이, 수박, 참외,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박, 파프리카, 멜론, 고추(풋고추, 홍고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셀러리, 피망, 파세리, 케일, 치커리, 식용허브, 양상추, 브로콜리, 비트 등
과수(17)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만감(한라봉), 단감, 자두, 키위(참다래), 유자, 매실, 모과, 살구, 앵두, 무화과, 금감, 석류 등
화훼(17)	장미, 국화, 백합, 호접란, 선인장, 난초, 팬지, 페츄니아, 향나무, 단풍나무, 동백, 연상홍, 튜립, 아이리스, 안개꽃, 카네이션, 야생화 등
특용(19)	참깨, 들깨, 땅콩, 유채, 인삼(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버섯(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상황), 녹차, 면화, 담배, 왕골, 뽕나무 등
약용작물 (39)	강활, 길경, 참당귀, 만삼, 맥문동, 반하, 방풍, 백지, 청출, 백출, 사삼, 시호, 목단, 작약, 지황, 지모, 천궁, 천마, 장뇌, 택사, 하수오, 부자, 황금, 황기, 갈근, 용담, 결명자,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두충, 오가피, 박하, 음양곽, 홍화씨, 삼지구엽초, 율, 독활, 삼백초 등
임산물(12)	밤, 뽕은감, 대추, 호두, 복분자, 표고버섯, 더덕, 도라지, 잣, 은행, 고사리, 두릅 등
축산물(31)	한우(비육우, 번식우), 육우, 젓소, 돼지(양돈업, 종돈업), 닭(종계업, 부화업, 산란계, 육용계), 오리(종오리업, 부화업, 오리), 산양(염소), 면양, 꿀벌, 토끼, 사슴, 개, 거위, 칠면조, 메추리, 말, 노새, 당나귀, 오소리, 뉴트리아, 지렁이, 타조, 꿩, 관상용 조류 등

<3. 가축 사육시설 현황, 4. 가축(한우, 육우, 젖소) 사육규모 기재요령>

⑰란은 축사,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⑱란은 축사시설의 경우 소유여부(소유/비소유)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⑲란은 가축종류가 기타 가축인 경우에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⑳란은 토지 지번별 해당되는 지번에 경영형태(자영, 수탁)를 기재합니다.

* 자영 :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축사에서 본인 소유의 축산물을 사육하는
농업경영 형태

* 수탁 :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축사에서 타인 소유의 축산물을 계약에 의
해 일정한 대가(수수료 등)를 받고 생산해 주는 농업경영 형태

㉑란은 가축의 경우 축사의 총 면적을 기재합니다.

㉒란은 등록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총 사육 마릿수를 기재합니다.

㉓란은 “지난해 1년간(1.1~12.31)” 총 출하 마릿수를 성축(7개월 이상)과 자축(7개월 미만)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㉔란의 “지난해 1년간(1.1~12.31)” 총 납유량을 기재합니다.

<4. 가축(돼지, 닭, 오리, 기타가축)사육 규모 기재요령>

㉕란은 “지난해 1년간(1.1~12.31)” 총 출하 마릿수를 성돈(2개월 이상)과 자돈(2개월 미만)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㉖란은 등록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총 사육 마릿수를 기재하되 종계업과 부화업을 병행하는 경영체는 종계업만 기재하고 부화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원종 : 종계·종오리를 생산하는 닭, 오리
- 종 : 실용계·실용오리를 생산하는 닭, 오리
- 실용 : 식용 계란(오리알), 닭·오리(고기)를 생산하는 닭, 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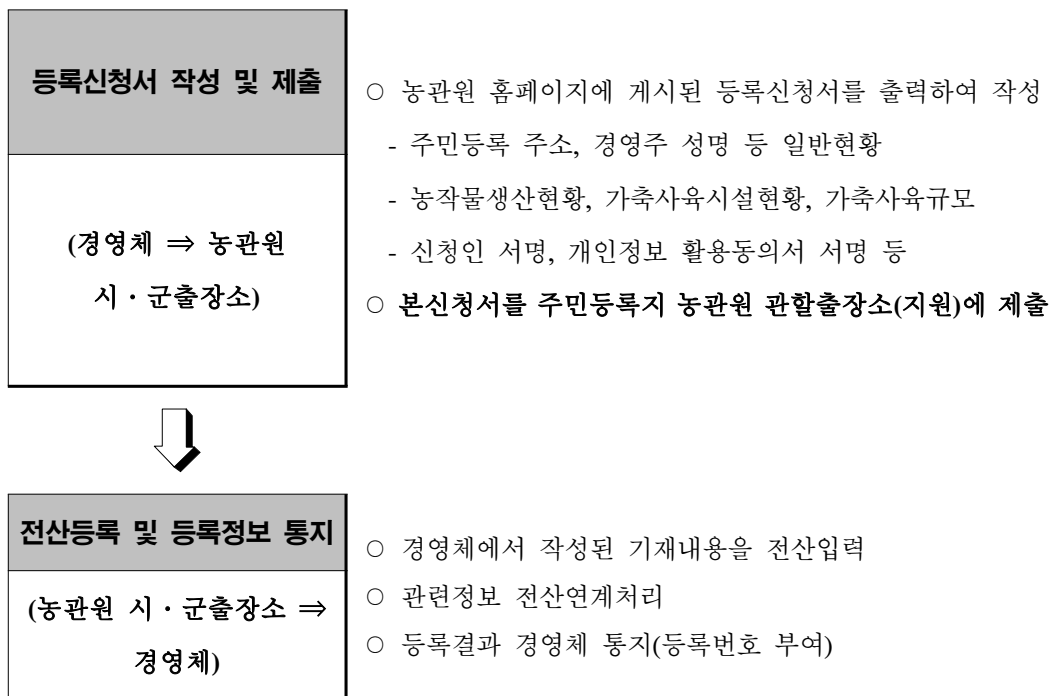
㉗“지난해 1년간(1.1~12.31)” 총 출하량을 기재합니다.

- ㉕에서 원종(GPS) 사육 농업경영체는 “종”란에 출하량 기재, 종(PS) 사육 농업경영체는 “실용”란에 출하량을 기재합니다.
- 종계업·종오리업은 지난해 총 출하량(공급량)에 대해 “알”을 출하한 경우 종계업란에, 알을 “병아리”로 부화하여 출하한 경우 부화업란에 기재합니다.
- 산란계를 사육하는 경영체 중 병아리를 구입·사육하여 산란 전에 판매하는 경영체의 출하량은 “천수 표시”란에 기재합니다

㉘란은 해당되는 기타 가축의 총 사육 마릿수(꿀벌은 “군”, 지렁이는 “면적(m²)”)를 등록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㉙란은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 관상용 조류 총 마릿수를 기재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참고 문헌

- 장원도, 1999. 「강원도 여성농민의 현실과 지위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강혜정, 2008,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강혜정·마상진, 2007.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경미, 2002. “여성의 농업 참여유형에 따른 지위 인정 방안.” 『농촌생활과학연구』 23(1): 11~16.
- 김경미, 2005,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대안에 관한 고찰”, 『농민과 사회』, 통권 39호(겨울): 53~79.
- 김경미, 2004,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방안”, 『농정연구』, 통권11호(가을): 91~125.
- 김경미, 2005,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대안에 관한 고찰”, 『농민과 사회』, 통권 39호(겨울): 53~79.
- 김경미, 2007, “아시아 여성농업인 지위지표(GEIA)의 설정 :여성농업인 지위 및 역할 연구 지도 목표 달성의 기준지표”, 『농촌자원과 생활』, 통권111호(가을): 51~59.
- 김경미·고운미, 2005,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영농의사결정 참여 실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3): 47~64.
- 김미숙, 2006. 「한국 여성농업인정책의 적극적 조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 2003. “글로벌 가버넌스의 여성정책: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18: 239~268.
- 김영옥, 김이선, 200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부.
- 김영옥 외, 2001. 「여성농업인의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농림부.
- 김영옥 외, 2005.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농림부.
- 김용택 외, 2003. 「농업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이선, 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3개 마을 사례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 2004. “여성농업인의 다양성과 정책적 함의: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정연구』 11: 141~163.
- 김종숙, 정명채, 1992.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주숙, 1994. 「한국 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아카데미.
- 농림부, 2001.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2001-2005)」.

- 농림부, 2006.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3. 「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원사례」.
- 농림수산식품부, 2008. 「여성농어업인정책 2007년 추진내용 및 2008년 시행계획(안)」,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 농촌진흥청, 2005.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일본의 가족경영협약과 여성농업인 지원제도」, 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
- 박대식, 2000. “WTO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전망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 개선교육 세미나」 발표논문.
- 박대식, 2000.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2000년도 도 임원 교육」 발표논문.
- 박대식, 2001. “농촌복지사업의 방향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제1회 전국여성농업인대회 학술토론회」 발표논문.
- 박대식, 2002. “농촌사회의 변화 전망과 바람직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농촌생활과학」 23(1): 74~79.
- 박대식 외, 2002.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2004,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민선, 1999, “EC 회원국의 여성농업인 정책”, 1999년도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방안 심포지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109~127.
- 박민선, 2000. “EU 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농협조사월보」 45(4): 1~13.
- 박민선, 2004. “여성농업인 경영참여 촉진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농협경제연구」 30: 25~44.
- 박민선, 허미영, 2005. “한국농가의 성별 불평등과 변화가능성: 가족경영협약서 분석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5(1): 103~132.
- 박민선, 임찬영, 2007. “여성농업인 인구 추계와 정책적 함의.” 「농촌사회」 17(1): 69~90.
- 박성재 외, 2007. 「농업·농촌종합대책 집행평가 및 조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사)생활개선중앙회, 2006. 「여성농업인 불평등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 신경애, 2006. “일본의 남녀공동참여사회와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일본문화연구」 19: 187~207.
- 신동애, 2008. “일본의 남녀공동참여형성 정책을 둘러싼 담론과 평가: Career Path와 Gender Empowerment 관점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심영근, 이상무, 1999. 「새로 쓴 농업경영학의 이해」, 삼경문화사.

- 이동필 외. 2006. 「농어촌 지역개발·복지 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이호철, 2003.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농촌인력 육성방안: 경상북도의 농촌여성인력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정기환, 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환 외, 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만철(역), 2004, “일본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 방안”, 『농정연구』, 통권11호(가을) pp.183~200, 일본 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 편저.
- 정명채, 박대식. 1999.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용복 역, 1989. 「농업경영」, 부민문화사.
- 정책연수단, 2005.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선진국의 농어촌 복지보장체계 연구」. 정책연수 보고서.
- 조희금, 1998.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북지역 농촌지도자층 농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41~54.
- 최규련, 2001. “한국 농촌여성의 성역할태도, 부부간 지위수준 및 지위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53~72.
- 최동주 외, 2004.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과 아시아 여성복지정책 비교.” 『국제지역연구』 8(1): 271~304.
- 최윤지, 2006. 「농업인 부부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 개발연구소.
- 최윤지, 2007.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정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나라당 정책위원회(편).
- 한국여성농민연구소, 1997. 「21세기 한국농업과 여성농민」.
- 허미영·박민선. 2004,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실태와 그 결정요인” 『농촌사회』 14(1): 205~237.
- Ahmad, Zubeida, 1984, “Rural Women and Their Work: Dependence and Alternatives for Chang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23(1): 71~86.
-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1994. 「Women in Farming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 Boserup, Ester. 1970. 「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St. Martin's Press.
- Droit Rural, 2007, 「Droit Rural」, ellipses.
- European Commission, 2002, 「Agriculture: The Spotlight on Women」.

- European Commission, 2005, '‘Making Work Pay’ Debates from a Gender Perspective」.
- European Commission, 2005, 'Reconciliation of Work and Private Life」.
- European Commission, 2006, 'Rural Development Success Stories」.
- European Commission, 2006, 'The Gender Pay Gap: Origins and Policy Responses」.
- European Commission, 2008, 'Manual for Gender Mainstreaming」.
- European Commission, 2008, 'European Community Acts: Equality for Women and Men
Non-discrimination」.
- European Commission, 2008, 'The Life of Women and Men in Europe」.
- European Commission, 2008, 'Gender Inequality in the Risk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for Disadvantaged Groups in Thirty European Countries」.
- European Commission, 2008, 'Report i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 European Commission, 2008, 'A Selection of Leader+ Best Practices」.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6,
'Employment in Rural Areas: Closing the Jobs Gap」.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8,
'Rural Development in the EU」.
-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2007, 'Report
on the Situation of Women in Rural Areas of the EU」.
- European Women’s Lobby, 2007, 'Women Shaping the Future of Europe」.
- FNSEA, 2006, '50 ans d’histoire」.
- FNSEA, 2006, 'La Commission Nationale des Agricultrices」.
- FNSEA, 2008, 'Commission Nationale des Agricultrices」.
- Gasson, Ruth and Michael Winter, 1992. “Gender Relations and Farm Household
Pluriactivity.” 『Journal of Rural Studies』 8(4): 387～397.
- Grandguillot Dominique, 2008, 'nouveau Droit du Travail et de la Sécurité sociale」, Gualino.
- Haney, Wava G. and Jane B. Knowles(eds.). 1988. 'Women and Farming: Changing Roles,
Changing Structur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Haugen, Marit S. and Arild Blekesaune, 2005. “Farm and Off-farm Work and Life
Satisfaction among Norwegian Farm Women.” 『Sociologia Ruralis』 45(1/2): 71～
85.
- Kazakopoulos, L., I. Gidakou, 2003. “Young Women Farm Heads in Greek Agriculture:
Entering Farming through Policy Incentives.” 『Journal of Rural Studies』 19: 397～
410.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8, 「La protection sociale en France」.
- Li, Jianghong. 2005. “Women’s Status in a Rural Chinese Setting.” 「Rural Sociology」 70(2): 229~252.
- MSA, 2006, 「de Législation Sociale Agricole」.
- MSA, 2008, 「Chiffres utiles MSA」.
- MSA, 2008, 「History of the French Agricultural Social Security」.
- Park, Dae Shik. 1999. “A Sociological Analysis on the Roles of Farm Women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19(2): 243~261.
- Symes, David. 1991. “Changing Gender Roles in Productionist and Post-productionist Capitalist Agriculture.” 「Journal of Rural Studies」 7(1/2): 85~90.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인 쇄 2008. 11.

발 행 2008. 11.

발행처 농림수산식품부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02-500-1828, 1829 Fax: 02-503-7295

<http://www.mifaff.go.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